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2017. 2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2017. 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2017. 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ISA와 연계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1. 연구개요

- 현재 저축 지원, 특정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존재
 - 2017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포함하여 13개
 - 이와 더불어 「소득세법」상 조세지출제도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 등 2개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 등에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2. 분석 내용 및 결과

① 타당성 분석

- (정부지원의 필요성) 저축과 투자 장려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

-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지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
- (지원방식) 저축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신규저축을 장려하기보다는 기존 저축자산을 과세특례 금융상품으로의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대부분 국가들은 가계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의무 저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저축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명확
- (대상 설정) 각 과세특례 상품별 가입 대상이 상이하고, 가입 대상의 제한이 없을 수록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가입대상을 제한하더라도 그 대상 안에서는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
 - 한편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2015년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소득 상위 10%의 가입률은 61% 수준이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가입률은 17%에 불과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장기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
 - 청년·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은 의무보유기간이 3년으로 일반형 5년보다는 짧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가입하기 어려움
- (가입한도) 각 과세특례 상품별 가입한도도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상품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 규모와 자산이동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ISA의 경우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12월 말 기준 평균 투자액은 14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 2,000만원의 가입한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

- (투자대상 금융상품) 각 과세특례별 투자대상 금융상품이 상이하여, 금융업종(상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적용되는 반면 저축은행 또는 일반시중은행 등에 적용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RP, 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이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비과세종합저축은 주식, 채권, 공제, 보험 등도 포함되어 있음

- (여타 지원제도와 중복성)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여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음
 - 주로 고소득층으로 중심으로 개인자산관리계좌(ISA),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해외투자전용펀드, 비과세종합저축 등에 중복가입이 가능
 -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제도를 운영 중
 -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에 일정금액 또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로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

② 효과성 분석

- (순저축의 증가)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신규저축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도입되어 왔고, 일반과세되는 금융상품에서 과세특례 금융상품으로 자산이동을 초래
 - 저축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

- (형평성 측면) 조세지출의 상당한 비용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귀결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훼손
 - 이는 고소득층이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중복가입하거나 서민 또는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많기 때문

- (세수효과) 「조세특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는 약 1조 4,805억 원 규모

- 이 중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가 1조 2,053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

③ 개선방안 분석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하여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저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제외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할 필요
 -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저축자들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 추가적으로 향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영구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그 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일몰도래 시 심층평가를 통해 정비할 필요
 -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 등 4개의 과세특례는 개별적인 정비가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생기주기별, 정책대상별로 구분 운영할 필요
 - 생애주기별: 청년형 ISA-일반형 ISA-장년층 ISA
 - 청년형은 만 15~29세
 - 일반형은 만 30~64세
 - 장년층은 만 65세 이상
 - 정책대상별: 농어민형(조합형) ISA-서민형 ISA

1) 정비 방안 1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의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각 세부 제도는 유지하면서, 중복가입은 제한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은 장년층 ISA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합 등의 예탁금은 농어민형(조합형) ISA로 명칭을 변경

- 이 경우, 개인들이 여러 형태의 ISA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조합 등의 예탁금도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최소한의 제도 변화를 통해 금융고소득자의 중복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

□ 대부분 현행 제도의 세부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존재

□ 그러나 대부분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보유기간 등으로 인해 가입률 제고에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2) 정비 방안 2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재설계하는 방안으로 가입대상, 세제혜택 등을 조정하는 방안

□ 가입대상자: 만 1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조합 등 예탁금은 만 20세 이상 개인
- 1안) 소득 구분 없이 15세 이상 개인
- 2안) 개인 거주자 모두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예탁금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세제혜택은 일정 금융소득까지 기본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탁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이고 연이자 3%를 가정하면 90만원의 이자소

득이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연이자 3%를 가정하면 15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

- 1안) 연령 구분 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
 - 2안) 연령별 연간 비과세 한도를 차등설계하는 방안
 - 예) 15세 미만 50만원, 일반형(15세 이상 65세 미만) 100만원, 고령자형(65세 이상) 150만원
 -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할 경우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효과적
- 세제혜택을 일정 금융소득까지 제한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15세 미만의 개인에게도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15세 이하에 한해서 가입한도를 설정하여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자녀, 손자 등을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있음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이미 자산이 형성된 계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을 더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
- 의무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
- 편입대상 금융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역내펀드, 역외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보험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하도록 허용할 필요
-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하도록 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 제도의 영구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8년까지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가 ISA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ISA는 영구적으로 운영 중

□ 가입 유형의 확대

- 신탁형, 일임형, 자유계약형 등
- 현재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특정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형도 포함시킬 필요
- 이는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또는 조합 등 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통합하기에 용이하며, 개인들이 가입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축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는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고, 세제혜택도 역진적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저축에 대한 지원이 신규저축을 증가시켰는지에 여부와 상관없이 도입되어 왔고, 일반과세되는 금융상품은 과세특례 상품으로 자산 이동을 초래
-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운용은 세수손실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지만, 이런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
- 대부분의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게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이런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운영으로 한정된 재정 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

□ 따라서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중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중복지원 문제를 개선할 필요

- 단순성, 효율성, 형평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
- 현행 과세특례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잠재적인 저축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축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효과가 약화됨
- 또한 현행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로 인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중복지원 문제를 개선할 필요

목 차

I. 서 론	15
II.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19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현황	21
가. 제도 운영 현황	21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23
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47
라. 주요 특징에 따른 분류	53
2. 해외사례	56
가. 미국	56
나. 영국	60
다. 일본	62
III. 경제·사회 여건분석 및 주요 쟁점 분석	67
1. 경제사회 여건분석	69
가. 저축률	69
나. 저금리	74
다. 가계의 자산구성 현황	74
라. 노후준비 현황	78
2. 주요 쟁점 분석	83
가. 타당성 분석 관련 쟁점	83
나. 효과성 분석 관련 쟁점	85
IV. 타당성 평가	87
1. 정부 역할로서 적절성	90
가. 저축률 제고의 필요성	90

나. 특정 금융분야의 지원의 필요성	92
2. 수행방법의 타당성	92
가. 지원방식의 타당성	92
나. 정책대상 설정의 타당성	94
다. 의무보유기간	97
라. 가입한도	98
마. 투자대상 금융상품	100
3.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검토	101
가. 여타 조세지출과 중복성	101
나. 재정사업과 중복성	101
V. 효과성 평가	107
1. 목표 달성도	109
가. 선행연구	109
나. 이론 모형	115
다. 추정 모형	120
라. 자료 및 추정 결과	122
2. 형평성 분석	132
가. 자료	134
나.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 추정	138
다. 형평성 분석	142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49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151
가. 타당성 평가	151
나. 효과성 평가	151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152
가. 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	152
나. ISA와 연계한 정비 방안	154
참고문헌	158

표 목 차

<표 II-1>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조세지출 규모('17년 1월 1일 기준)	22
<표 II-2> 사업소득금액별 공제한도	23
<표 II-3>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현황	24
<표 II-4>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현황	26
<표 II-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28
<표 II-6>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현황	31
<표 II-7>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기간별 저율과세	32
<표 II-8>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현황(2014년 귀속)	33
<표 II-9>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간별 저율과세	34
<표 II-10>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현황(2014년 귀속)	35
<표 II-11>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주요 내용	36
<표 II-12>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가입 현황	38
<표 II-13>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 현황	38
<표 II-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내용	40
<표 II-1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41
<표 II-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유형	41
<표 II-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42
<표 II-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43
<표 II-1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유형별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44
<표 II-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44
<표 II-21> 출자·투자 금액별 공제율	45
<표 II-22>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현황	46
<표 II-23> 저축성보험 계좌 수('13년 2월 15일 이후)	48
<표 II-24> 저축성보험 가입인원 추이('13년 2월 15일 이후)	48
<표 II-25> 저축성보험 납입규모 추이('13년 2월 15일 이후)	49
<표 II-26> 2억원 한도 보험 납입액별 현황('15년말 기준)	49

<표 II-27> 월적립식 보험의 납입액별 현황('15년말 기준)	50
<표 II-28> 연금계좌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17년 1월 1일 이후)	51
<표 II-29>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현황	52
<표 II-30>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현황	53
<표 II-31> 분야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54
<표 II-32> 일몰 도래 연도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분류	55
<표 II-33> 가입대상자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55
<표 II-34> 연령별 가입가능 금융상품	56
<표 III-1> OECD 회원국의 가계저축률	72
<표 III-2> OECD 회원국 총저축률 변화 추이	73
<표 III-3> 기준금리 변화 추이	74
<표 III-4> 소득분위별 자산 현황	75
<표 III-5> 순자산분위별 자산 현황	75
<표 III-6> 가구주 연령별 자산 현황	76
<표 III-7>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시 주된 운영방법	77
<표 III-8>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영방법	77
<표 III-9> 금융자산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	78
<표 III-10> OECD 회원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79
<표 III-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80
<표 III-12> 2015년 공적연금 수급자	80
<표 III-13> OECD 국가의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	81
<표 III-14> OECD 빈곤율 및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82
<표 IV-1>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102
<표 IV-2>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17년 1월 2일 기준)	104
<표 IV-3> 서울시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	106
<표 V-1> 추정에 사용된 변수 출처 및 단위	122
<표 V-2> 세후 이자율에 대한 민간 소비탄력성(1987~2016): 명목세율	129
<표 V-3> 세후 이자율에 대한 민간 소비탄력성(1987~2016): 실효세율	129

<표 V-4> 세후 이자율에 대한 가계소비탄력성(1987~2016): 명목세율	130
<표 V-5> 세후 이자율에 대한 소비탄력성(1987~2016): 가계소비, 실효세율	130
<표 V-6> 세후 이자율에 대한 소비탄력성: 2001~2016년	131
<표 V-7> 소득분위별 자산 보유 현황: 2013년 기준	135
<표 V-8>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2013년 기준	136
<표 V-9> 자산 유형별 연평균 수익률 추이 비교	137
<표 V-10> 소득분위별 실효이자율	137
<표 V-11> 소득분위별 이자율에 대한 금융자산탄력성 추정결과	140
<표 V-12> 소득분위별 자산, 이자율, 탄력성 현황	142
<표 V-13> 이자소득세 비과세 경우 총자산 증가 정도	143
<표 V-14> 이자소득세 비과세 경우 금융자산 증가 정도	144
<표 V-15> 비과세 대상 변화에 따른 GINI계수 변화	145

그림 목 차

[그림 III-1] 총저축률 추이(1960~2015년)	69
[그림 III-2] 가계 저축률 추이(1960~2015년)	70
[그림 III-3] 투자재원 자립도 추이(1960~2015년)	71
[그림 V-1] 1인당 소비 변화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3
[그림 V-2] 1인당 소득 변화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4
[그림 V-3]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5
[그림 V-4] 이자소득세율 변화: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6
[그림 V-5] 이자소득세율 간 격차: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6
[그림 V-6] 세후 실질이자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7
[그림 V-7] 세후 실질이자율 간 격차: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127
[그림 V-8]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총자산 GINI계수 변화	146
[그림 V-9]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 GINI계수 변화	147
[그림 V-10]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GINI계수 변화 비교	148

I. 서론



I. 서론

- 정부는 저축 지원, 특정산업 지원과 업종 간 형평성, 중산층 및 취약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금융상품에 비과세·감면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해 왔음
 - 2017년 현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포함하여 13개
 - 이와 더불어 「소득세법」상 조세지출제도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등 2개

- 한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본래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비과세·감면제도를 단순화할 필요도 존재

- 최근 정부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되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존재
 -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설하였고, 2016년에는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
 - 한편, 조합 등의 예탁금의 경우, 1976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해당 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하여 1995년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세로 전환되는 일몰제로 바뀌었으나 시한을 앞두고 연장을 거듭해 왔음
 - 2015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이 연장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최대한 살리면서 2016년에 새롭게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예를 들면, 모든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단일화하고,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요건, 지원방식 등을 차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
 - 이를 통해 금융업종·상품 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II.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사례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현황

가. 제도 운영 현황

- 2017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15개 항목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가 13개 항목
 - 그리고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가 있음

-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 국세감면 규모는 약 2조 8,606억원 수준으로 전망
 - 「조세특례법」상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약 1조 4,805억원으로 추정
 - 「소득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1,630억원으로 추정
 - 장기저축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약 771억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약 1조 859억원
 - 경과 규정에 따른 조세 지출이 약 2,171억원

- 「조세특례법」상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약 7,469억원으로 가장 큼
 - 두 번째로, 노인, 장애인 등의 저축 지원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이 약 3,484억원 수준
 - 그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1,712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100억원 순

〈표 II - 1〉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조세지출 규모('17년 1월 1일 기준)

(단위: 억원)

조세지출 내역	15년 실적	16년 전망	17년 전망
저축지원 국세감면(A+B+C)	27,317.74	27,307.44	28,606.59
▪ 조세특례법상 조세지출(A)	13,408	13,223	14,80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135	1,653	171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198	261	27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98	94	99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647	3,367	3,48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8	509	539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7,666	7,205	7,46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	1,10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6	134	12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
▪ 소득세법상 조세지출(B)	10,791	11,684	11,630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941	745	771
연금계좌세액공제	9,850	10,939	10,859
▪ 경과규정(C)	3118.74	2400.44	2171.59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16	291	31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395	377	390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892	560	57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392	1,047	789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0.19	-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45	24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55	4.44	4.5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7	92	98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9	5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년 조세지출 예산서』, 2016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 86조의 3)

가) 제도 현황

- (산업진흥)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을 과세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공제
 - 법인의 대표자로 해당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존에는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으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업소득 구간별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
 -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 일몰 없음

<표 II -2> 사업소득금액별 공제한도

사업소득	공제한도	
	~16년 12월31일까지	(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4천만원 이하	300만원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폐업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 후 5년 내 해지 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 1월 1후 해지하는 분부터는 가산세를 폐지

나) 운영 현황

- 2015년 근로소득자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공제가 입자는 6만 8,845명이고, 총공제 납입금액은 1,518.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공제납입금액은 약 221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구간별 공제 인원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자 소득자가 1만 6,0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 비중이 15.9%이고, 그다음으로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 비중이 11.9% 수준
- 소득구간별 평균 공제납입금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공제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평균 공제납입액은 90만원이고, 이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공제납입액이 증가하여 1억원 초과자의 공제납입액은 258만원 수준
- 소득구간별 공제액이 전체 공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소득자의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억원 초과자의 공제 비중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가 16.5%,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3.0% 순임

<표 II -3>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 인원	평균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인원	비중	평균금액	공제액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339	0.49	0.90	0.20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1,233	1.79	1.61	1.30
2천만 이하	1,961,900	17.65	2,464	3.58	1.68	2.73
3천만 이하	2,930,090	24.84	6,620	9.62	1.79	7.82
4천만 이하	1,928,195	34.96	7,627	11.08	1.96	9.82
4.5천만 이하	737,622	42.71	3,769	5.47	2.05	5.09
5천만 이하	622,341	47.76	3,792	5.51	2.08	5.20
6천만 이하	988,334	55.23	7,863	11.42	2.14	11.08
8천만 이하	1,303,229	69.50	10,968	15.93	2.29	16.52
1억 이하	570,400	89.33	8,159	11.85	2.42	13.03
1억 초과	596,124	150.65	16,011	23.26	2.58	27.20
합계	17,333,394	32.70	68,845	100.00	2.21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 2016

- 2015년 임의심층평가¹⁾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조세지출 형태의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됨
- 그러나 조세지원 혜택의 규모 및 수직적 형평성 문제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조세지출의 혜택이 과도하게 큼
 - 조세지출의 혜택이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가입자 간 혜택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 공제 등(제87조)

가) 제도 현황

- (주택) 서민, 중산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대상자: 7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포함
 -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
 - 연간 납입한도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 따라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나) 운영 현황

- 2015년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수혜자는 약 616,578명이고,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46만원으로 나타남

1) 김학수 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5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1

- 총공제금액은 2,807.8억원이고, 평균 금액은 약 46만원
 - 수혜자 1인당 평균 납입액은 약 115만원(46만원/40%)
- 소득구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인원과 평균금액은 소득과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
 - 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인원이 증가하고, 이후 5천만원까지는 가입인원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6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 평균 가입금액은 6천만원 이하 구간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소득구간별 소득공제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구간의 저축마련저축공제액이 20.6%로 가장 큼
 - 다음으로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17.1%,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가 16.2%,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가 13.4% 순임

<표 II -4>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 인원	평균 소득	주택마련저축공제			
			인원	비중	평균금액	공제액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2,458	0.40	0.29	0.26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7,952	1.29	0.35	0.99
2천만 이하	1,961,900	17.65	23,142	3.75	0.39	3.20
3천만 이하	2,930,090	24.84	90,810	14.73	0.41	13.38
4천만 이하	1,928,195	34.96	130,057	21.09	0.44	20.56
4.5천만 이하	737,622	42.71	67,347	10.92	0.47	11.24
5천만 이하	622,341	47.76	61,864	10.03	0.48	10.65
6천만 이하	988,334	55.23	94,966	15.40	0.50	17.05
8천만 이하	1,303,229	69.50	94,660	15.35	0.48	16.22
1억 이하	570,400	89.33	26,771	4.34	0.41	3.94
1억 초과	596,124	150.65	16,551	2.68	0.42	2.49
합계	17,333,394	32.70	616,578	100.00	0.46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 2016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 2)

가) 제도 현황

- (재정금융) 농·어업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
 - 농어민이 사망한 경우,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해지할 경우

- 가입 대상자는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
 - 일반농어민: 2ha 이하 농지소유농민, 타인농업종사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어민, 양식어민, 선원, 젓소 20마리 이하 등 일정규모의 가축소유 양축가, 10ha를 초과하지 않는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임차한 임업인
 - 저소득농어민: 1ha 이하 농지소유(임차)농민, 5톤 이하 소유 어민, 일반농어민의 1/2 이하의 가축소유, 사육양축가, 5ha를 초과하지 않는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임업인
 - 다만,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농어업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자는 제외

-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저축납입한도는 증액하는 한편 장려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
 - 저축납입한도는 기존 일반농어민 114만원, 저소득 농어민 120만원에서 2017년부터는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 모두 동일하게 240만원으로 증액
 - 장려금은 일반농어민의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일 때 평균 잔액의 4.5%에서 2.7%, 계약기간이 5년일 때 평균 잔액의 12.5%에서 7.5%
 - 저소득 농어민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일 때 평균 잔액의 13.5%에서 6.3%, 계약기간이 5년일 때 35.5%에서 16.5%로 하향 조정

- 자발적 중도해지 장려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중도해지 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
 - 가입후 3년 이후 자발적으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금리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률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
 - 한편, 해외이주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서 제외

나) 운영 현황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누적 계좌 수는 34만 6천계 좌이고 불입액은 약 1조 1,177억원으로 나타났고, 장려금지급액은 약 988억원
 - 2011년 이후 누적계좌 수, 신규계좌 수, 불입액, 장려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II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단위: 천좌,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계좌 수	439	424	403	378	346
신규 계좌 수	101	86	84	76	66
불입액	12,670	12,738	12,348	11,969	11,177
장려금지급액	1,213	980	996	983	988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16.11.25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 6)

가) 제도현황

- (주택) 수익률 확보로 리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및 임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
 -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등에 투자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 리과세
 -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을 2년 연장함에 따라 2018년 말에 일몰 도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5%의 세율로 저율과세하고,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5천만원 이하 경우 9%로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5%로 인하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 88조의 2)

가) 제도 현황

- (복지일반)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
 - 가입대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 노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 2017년 63세, 2018년 64세, 2019년 65세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가입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2015년 만 61세에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19년 만 65세 이상
 - 가입한도: 5,000만원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않는 개인은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제외
 - 전 금융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다수 계좌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취급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이 가능)

- 그리고 투자가능 금융상품은 투자신탁, 보험, 공제, 주식, 채권, RP,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 4)

가) 제도 현황

- (노동)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취득한 우리사주 출자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또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나) 운영 현황

-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8만 9,058명이 우리사주조합출연을 통한 소득공제를 혜택을 보았고, 이들의 평균 공제금액은 약 319만원(총 2,845.0억원)으로 나타남
 - 소득구간별 공제인원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인원이 2만 6,773명으로 전체 공제대상자의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이 2만 39명으로 22.5%,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만 7,738명으로 29.92%를 차지
 - 이를 종합해 보면, 근로소득 6천만원 초과자가 6만 4,550명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
- 소득구간별 평균 공제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평균 공제액은 51만원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초과자의 평균 공제액은 349만원

- 소득구간별 출연금 공제액 비중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자의 출연금 공제액이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가 22.2%,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0.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0.4% 순

<표 II -6>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인원	평균 소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인원	비중	평균금액	출연금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69	0.08	0.51	0.01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379	0.43	1.13	0.15
2천만 이하	1,961,900	17.65	502	0.56	1.64	0.29
3천만 이하	2,930,090	24.84	1,683	1.89	2.48	1.46
4천만 이하	1,928,195	34.96	4,866	5.46	2.50	4.27
4.5천만 이하	737,622	42.71	3,374	3.79	2.95	3.49
5천만 이하	622,341	47.76	4,082	4.58	3.07	4.40
6천만 이하	988,334	55.23	9,553	10.73	3.11	10.43
8천만 이하	1,303,229	69.50	20,039	22.50	3.15	22.18
1억 이하	570,400	89.33	17,738	19.92	3.28	20.47
1억 초과	596,124	150.65	26,773	30.06	3.49	32.83
합계	17,333,394	32.70	89,058	100.00	3.19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2016

7)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89조의 3)

가) 제도 현황

- (농업, 농촌) 농어민, 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민 또는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 가입대상: 가입 당시 만20세 이상 거주자로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또는 회원
- 가입한도: 1명당 3천만원
-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9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5%로 저율과세, 그리고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

〈표 II -7〉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기간별 저율과세

이자 발생 기간	세율	지방소득세
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	비과세	비과세
2019년1월1일~2019년 12월31	5% (분리과세)	비과세
2020년 1월 1일 이후	9% (분리과세)	비과세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나) 운영 현황

-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가입자는 약 645만명이고, 이들의 평균이자소득은 약 86만원으로 나타남
 - 대체로 소득 1억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증가하나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감소
 - 한편,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44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예탁금 가입금액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예탁금 이자소득 중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의 비중이 10.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의 비중이 6% 순

〈표 II -8〉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 현황(2014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종합소득 소득구간	총 인원	평균 종합소득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가입률	평균 이자소득	이자소득 비중
1천만원 이하	40,268,274	1.08	4,400,511	10.93	0.84	67.24
2천만원 이하	3,937,101	14.45	727,350	18.47	0.82	10.85
3천만원 이하	2,230,494	24.61	399,746	17.92	0.83	5.99
4천만원 이하	1,398,532	34.65	256,329	18.33	0.86	4.01
5천만 이하	979,807	44.72	187,626	19.15	0.93	3.16
6천만 이하	698,862	54.68	142,997	20.46	0.99	2.58
7천만 이하	446,497	64.60	99,654	22.32	1.06	1.92
8천만 이하	285,772	74.67	64,672	22.63	1.08	1.27
9천만 이하	208,762	84.72	47,340	22.68	1.06	0.91
1억원 이하	149,780	94.71	34,961	23.34	1.09	0.69
2억원 이하	354,390	129.06	71,631	20.21	1.13	1.46
3억원 이하	53,801	240.83	8,443	15.69	1.14	0.17
4억원 이하	19,563	343.28	2,672	13.66	1.21	0.06
5억원 이하	9,505	444.83	1,170	12.31	1.23	0.03
5억 초과	18,994	1146.97	1,993	10.49	1.21	0.04
합계	51,060,134	9.00	6,447,095	12.63	0.86	100.00

자료: 국세청 내부 과세자료

8)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 3)

가) 제도 현황

- (농업, 농촌) 농어민, 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민 또는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감면

○ 가입자의 연령 제한이 없음

- 대상 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표 II -9>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간별 저율과세

이자 발생 기간	세율
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	비과세
2019년1월1일~2019년 12월31	5% (분리과세)
2020년 1월 1일 이후	9% (분리과세)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나) 운영 현황

-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가입자는 약 1,284만명이고 평균 배당소득은 약 7만원으로 나타남
 - 대체로 소득 1억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증가하나 1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감소
 - 한편,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94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자금액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출자금 배당소득 중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비중이 8.3%,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비중이 4.6% 순

<표 II -10> 종합소득규모별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현황(2014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종합소득 소득구간	총인원	평균 종합소득	비과세 출자금			
			가입자	가입률	평균 배당소득	배당소득 비중
1천만원 이하	40,268,274	1.08	9,454,764	23.48	0.06	69.11
2천만원 이하	3,937,101	14.45	1,127,410	28.64	0.06	8.33
3천만원 이하	2,230,494	24.61	633,063	28.38	0.06	4.61
4천만원 이하	1,398,532	34.65	427,427	30.56	0.07	3.44
5천만 이하	979,807	44.72	326,523	33.33	0.08	3.04
6천만 이하	698,862	54.68	246,144	35.22	0.09	2.68
7천만 이하	446,497	64.60	173,343	38.82	0.11	2.13
8천만 이하	285,772	74.67	118,963	41.63	0.14	1.89
9천만 이하	208,762	84.72	91,985	44.06	0.14	1.49
1억원 이하	149,780	94.71	69,131	46.16	0.14	1.12
2억원 이하	354,390	129.06	140,545	39.66	0.17	2.74
3억원 이하	53,801	240.83	16,051	29.83	0.24	0.44
4억원 이하	19,563	343.28	5,281	26.99	0.24	0.15
5억원 이하	9,505	444.83	2,575	27.09	0.25	0.07
5억 초과	18,994	1146.97	4,589	24.16	0.38	0.20
합계	51,060,134	9.00	12,837,794	25.14	0.07	100.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9)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 15)

가) 제도 현황

- (재정금융)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및 코넥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서 주식을 보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 납입한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그 이후는 3천만원
 -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가입 후 3년까지 혜택 부여
 -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몰을 1년 재연장

10)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제91조의 17)

가) 제도 현황

-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재·간접펀드, 국내상장 ETF도 과세요건 충족 시 가능
 - 가입대상은 거주자 개인
 - 가입기한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상시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 및 입출금이 가능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ETF의 교체매매는 가능하나, 이후 신규종목은 매수 불가

<표 II -11>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 대한민국 거주자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기관 납입금액 합산)
편입가능 금융상품	• 직·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재간접펀드, 국내상장 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 포함) • 과세: 주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 등(관련 환손익 포함)
세제혜택 기간	• 계좌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
가입방식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전용 저축계좌 가입
기타	• ‘17.12.31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ETF의 교체매매는 가능하나, 이후 신규종목은 매수불가
가입가능기간	• 2016년2월29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료: 금융투자협회, 「38개 자산운용사,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29일 동시 출시」, 보도자료, 2016.2.25.

- 세제지원은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계약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일까지 세제혜택 부여
 - 주식 배당, 이자소득, 기타손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납입한도는 3천만원(모든 금융기관 통합한도)

나) 운영 현황

- 금융투자협회(2017)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납입 규모는 약 1조 34억원 규모
 - 2016년 2월 29일 출시 이후, 월평균 1,000억원 규모가 유입되어 펀드 판매 약 10개월만에 1조원을 초과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가입하기 위한 전용계좌수는 약 26만 계좌로 다수의 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26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
-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계좌 수는 은행이 가장 많고 납입금액은 증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계좌 수는 은행이 약 16만 계좌로 전체 계좌의 약 6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증권이 약 9.7만 계좌로 약 38%를 차지
 - 납입금액은 증권이 5,220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은행이 약 4,687억원으로 약 46.7%를 차지
 - 이는 상대적으로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층이 주로 증권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은 386만원으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납입한도 3,000만원의 약 13.8%에 불과
 -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은 386만원이고, 보험·직판의 평균 납입금액이 가장 큰 584만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증권사가 536만원이고, 은행이 292만원으로 나타남

<표 II -12>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가입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금융업권	누적 판매 실적				
	계좌수	비중	납입금액	비중	계좌당
증권	97,442	37.5	522,003	52.0	536
은행	160,492	61.7	468,733	46.7	292
보험	2,175	0.8	12,649	1.3	582
합계	260,109	100	1,003,385	100.0	386

자료: 금융투자협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조원 돌파」, 보도참고자료, 2017.1.11.

- 전체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중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의 설정액이 5,111억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액의 약 51%를 차지
 -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 펀드의 설정규모가 약 1,387억원으로 가입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이 피델리티 글로벌배당인컴 펀드 1,025억원
-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의 수익률을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10개 펀드 중 한 개 펀드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모두 설정 이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은 환헤지형 펀드가 환노출형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3>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설정규모 상위 10개 펀드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펀드명	수익률	총설정규모	투자대상
1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환헤지)	7.92	138,670	베트남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환노출)	7.44		
2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환헤지)	7.34	102,506	글로벌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환헤지)	18.52		
3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환노출)	14.28	60,948	중국
	KB중국본토A주	13.56		
4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환헤지)	12.17	32,354	중국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환노출)	10.13		
5	신한BNPP중국본토RQFII(환헤지)	2.06	31,027	중국
	신한BNPP중국본토RQFII(환노출)	-0.5		
6	유리베트남알파(환헤지)	11.13	29,185	베트남
	유리베트남알파(환노출)	20.1		
7	AB미국그로스	9.92	28,831	미국
	한화글로벌헬스케어	0.6		
8	블랙록월드골드증권(환헤지)	12.97	23,074	글로벌
	블랙록월드골드증권(환노출)	7.87		
9	합계		511,688	

자료: 금융투자협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조원 돌파」, 보도참고자료, 2017.1.11.

- 수익률은 유리베트남알파(환노출)이 2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삼성중국본
토중소형Focus가 18.52% 순임

1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 18)

가) 제도 현황

- (재정금융)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18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 가입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
 -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직전연
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요건
 - 1인 1계좌로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 편입 가능 금융자산: 예금, 적금, 예탁금, 집합투자증권, 증권, 증서
 - 펀드(집합투자증권, ETF, REITs 등),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 예금
(예탁금, 예치금, RP 등)
 - 의무가입 기간: 5년
 - 청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3년
 - 납입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재형저축 비과세특례와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를 통합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중복수혜를 제한

- 기존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경우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연간 2천만원에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 특징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 편입 금융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표 II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자격	직전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소득이 있는 경우
납입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편입가능 금융상품	1) 펀드 2) 파생결합증권 3) 예·적금 등 편입가능 -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 (예금성 상품)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RP
의무가입기간	5년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 청년(15~29세 가입자)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단축
만기 전 중도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사유) ①사망 ②해외이주 ③천재지변 ④퇴직 ⑤사업장의 폐업 ⑥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9.0% 분리과세(0.9% 지방소득세 제외) 단,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 250만원 초과금액: 9.0% 분리과세(0.9% 지방소득세 제외)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높은 가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기존 소장펀드·재형저축 가입자격(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보다 완화

<표 II -1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구분	일반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 제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0% 분리과세 (0.9% 지방소득세 제외)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금액 9.0% 분리과세 (0.9% 지방소득세 제외)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 운용방식에 따라 ①일임형 ISA ②신탁형 ISA로 구분
 - 가입자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표 II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유형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특징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금 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허 용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나) 운영 현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가입자는 약 239만명이고, 납입액은 약 3조 2,116억원으로 가입자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142만원 수준
 - 금융업권별로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은행을 통한 가입자 수가 약 21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증권이 21만명으로 약 9%를 차지
 - 금융업권별 납입금액을 살펴보면, 은행이 2조 6,589억원으로 전체의 7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증권이 7,237억원으로 21.2%를 차지함
 - 금융업권별 가입자당 평균 납입액을 살펴보면, 증권이 평균 34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보험으로 207만원, 은행이 123만원으로 나타남

<표 II -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 억원, 만원)

금융업권	누적 가입 실적				
	가입자 수	비중	납입금액	비중	가입자당
은행	2,180,225	91.2	26,859	78.7	123.2
증권	209,645	8.8	7,237	21.2	345.2
보험	918	0.0	19	0.1	207.2
합계	2,390,788	100.0	34,116	100	142.7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신탁형의 가입자 수와 납입액이 절대적으로 큼
 - 신탁형 가입자 수가 211만명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납입액도 2조 8,520억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함
 - 한편 일임형 가입자 수는 28만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지만, 평균 납입액이 202만원으로 신탁형 가입자 평균 납입액보다 약 67만원 많음

<표 II -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 억원, 만원)

유형	누적 가입 실적				
	가입자 수	비중	납입금액	비중	가입자당
신탁형	2,113,619	88.4	28,520	83.6	134.9
일임형	277,169	11.6	5,595	16.4	201.9
합계	2,390,788	100.0	34,116	100	142.7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 다음으로 가입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자 중 일반형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입자 평균 납입액은 농어민 중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사업소득자 중 일반형 가입자가 166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형 가입자가 14만명,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791명 순
 - 평균 납입액은 일반 가입자가 129만원, 청년 105만원,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152만원
 - 농어민 중 일반형 가입자는 3,002명, 청년형은 80명,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는 14명임
 - 평균 납입액은 일반가입자 632만원, 청년 125만원,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714만원
 - 서민형 가입자는 약 59만명으로 평균 납입액은 189만원
- 농어민의 일반형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평균 가입액은 근로·사업소득자의 평균 가입액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민 중 일반형 가입자 수는 3,002명에 불과하지만, 평균 납입액은 635만원으로 근로사업소득자 중 일반형 가입자의 평균 납입액 128만원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유형별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 억원, 만원)

구분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서민형
	일반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수령자	일반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수령자	
가입자수	1,659,38	140,806	791	3,002	80	14	586,715
투자금액	21,338	1,476	12	191	1	1	11,097
가입자당	128.6	104.8	151.7	636.2	125.0	714.3	189.1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 마지막으로 가입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납입액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 구간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가입자가 증가하나 이후 50대 구간 부터는 가입자가 감소
 - 한편, 평균 납입액은 대체로 30대 구간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입액이 증가

<표 II -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억원, 만원)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	60세 이상
신탁형	가입자	4,499	282,615	582,015	627,107	449,988	167,385
	투자금액	33	2,648	4,396	7,592	8,609	5,242
	가입자당	73.3	93.7	75.5	121.1	191.3	313.2
일임형	가입자	553	31,478	71,758	84,864	64,504	24,012
	투자금액	7	374	704	1,611	1,844	1,055
	가입자당	126.6	118.8	98.1	189.8	285.9	439.4
합계	가입자	5,052	314,093	653,773	711,971	514,492	191,397
	투자금액	40	3022	5100	9203	10453	6297
	가입자당	79.2	96.2	78.0	129.3	203.2	329.0

자료: ISA 다모아(www.isa.kofia.or.kr), 검색일자: 2017.01.31

12) 중소기업창업투자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가) 제도 현황

- (산업진흥) 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매수할 경우에는 제외

〈표 II -21〉 출자·투자 금액별 공제율

투자대상	소득 공제율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투자액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	- 1,500만원 이하 100% - 1,500만원~5천만원 이하 50% - 5천만원 초과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나) 운영 현황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구간별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인원은 1,880명에 불과하고 총공제대상 금액은 317억원(평균 1,686만원) 수준

- 소득 1억원 초과자가 751명으로 전체 출자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출자금액은 2,717만원
- 다음으로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출자자가 322명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출자금액은 1,235만원

<표 II -22>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인원	평균 소득	투자조합출자 등			
			인원	비중	평균금액	출자금액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2	0.11	0.36	3.19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11	0.59	0.40	4.71
2천만 이하	1,961,900	17.65	17	0.90	1.65	6.11
3천만 이하	2,930,090	24.84	93	4.95	2.72	12.84
4천만 이하	1,928,195	34.96	130	6.91	4.48	11.90
4.5천만 이하	737,622	42.71	65	3.46	4.57	5.56
5천만 이하	622,341	47.76	82	4.36	7.35	5.24
6천만 이하	988,334	55.23	171	9.10	9.52	9.63
8천만 이하	1,303,229	69.50	322	17.13	12.35	15.98
1억 이하	570,400	89.33	236	12.55	16.57	8.99
1억 초과	596,124	150.65	751	39.95	27.17	15.85
합계	17,333,394	32.70	1,880	100.00	16.86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 2016

1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27)

가) 제도 현황

-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저율과세
 -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의 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최초 도입 시에는 25%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들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

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1)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6조)

가) 제도 현황

-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장기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을 비과세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2017년 2월 3일 개정하여 한도를 축소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동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이 가입한 지 10년 이상: 2017년 3월 31이전: 2억원 한도, 이후 1억원 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

나) 운영 현황

- 2015년말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계좌 수는 약 1,121만개이고 이 중 월 적립식계좌가 약 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일시납 보험으로 2억원 한도가 설정된 저축성보험은 약 69만 계좌로 전체 저축성보험의 약 6% 수준에 불과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약 932만 계좌로 전체 저축성보험의 약 83%를 차지
 - 종신형 연금보험 형태의 저축성 보험은 약 111만 계좌로 약 10%를 차지

<표 II -23> 저축성보험 계좌 수('13년 2월 15일 이후)

(단위: 개, %)

구분	2억원 한도		월적립식		종신형 연금	
	계좌수	증감률	계좌수	증감률	계좌수	증감률
2013년말	200,342		3,436,607		469,270	
2014년말	443,275	121.3	6,699,353	94.9	808,738	72.3
2015년말	692,227	56.2	9,319,840	39.1	1,113,181	37.6

주: 보험계약기준, 실제, 누적개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최근 저축성보험의 유형별 가입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억원 한도 보험의 가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월적립식 보험의 가입자 수가 2014년 전년 대비 86.9%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7.9% 증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의 가입자 수가 2014년 전년 대비 70.3%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7.8% 증가

<표 II -24> 저축성보험 가입인원 추이('13년 2월 15일 이후)

(단위: 명, %)

구분	2억원 한도		월적립식		종신형	
	인원수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2013년말	188,544		2,679,163		436,438	
2014년말	412,395	118.7	5,002,198	86.7	743,218	70.3
2015년말	640,934	55.4	6,898,464	37.9	1,024,322	37.8

주: 보험계약기준, 실제, 누적개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2015년말 기준 저축성보험 유형별 납입규모를 살펴보면, 2억원 한도 보험의 납입액이 전체 납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억원 한도 보험의 납입액이 25조 8,001억원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
 - 다음으로 월 적립식보험의 납입액이 24조 29억원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
 -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의 납입액이 7조 7,718억원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

<표 II -25> 저축성보험 납입규모 추이('13년 2월 15일 이후)

(단위: 백만원, %)

구분	2억원 한도		월적립식		종신형	
	납입규모	증감률	납입규모	증감률	납입규모	증감률
2013년말	6,706,839		3,155,544		1,894,971	
2014년말	16,178,862	141.2	11,841,975	275.3	4,762,623	151.3
2015년말	25,800,125	59.5	24,002,956	102.7	7,771,776	63.2

주: 보험계약기준, 실제, 누적개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2015년말 기준 2억원 한도 보험의 납입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계좌수와 인원수는 10%에 못 미치나, 전체 납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 5천만원 이하 계좌수와 인원수의 비중은 약 78%수준으로 가장 크나, 납입액 비중은 약 39.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당 평균 납입액이 적기 때문
 - 한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인원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하나 전체 납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 수준

<표 II -26> 2억원 한도 보험 납입액별 현황('15년말 기준)

(단위: 개, %, 명)

구분	2억원 한도 보험				납입규모	
	계좌수	비중	인원수	비중	누적	비중
5천만원 이하	536,798	77.5	503,520	78.5	10,155,520	39.4
5천만원 초과~1억원	89,080	12.9	78,591	12.3	7,401,276	28.7
1억원 초과~2억원	66,349	9.6	58,914	9.2	8,243,328	32.0
합계	692,227	100	641,025	100	25,800,124	100

주: 보험계약기준, 실제, 누적개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2015년말 기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납입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하 계좌 수와 인원수는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납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함

- 다음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계좌 수와 인원 비중이 5% 수준이고, 납입액 비중은 13.2%
- 월 납입액이 증가할수록 계좌 수와 인원 수의 비중은 감소하나,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납입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표 II -27> 월적립식 보험의 납입액별 현황('15년말 기준)

(단위: 개, %, 명)

구분	2억원 한도 보험				납입규모	
	계좌수	비중	인원수	비중	누적	비중
~50만원 이하	8,465,572	90.8	6,317,205	91.1	15,846,304	66.0
50~100만원	519,266	5.6	367,500	5.3	3,174,548	13.2
100~200만원	165,766	1.8	110,396	1.6	1,698,078	7.1
200~300만원	58,083	0.6	44,588	0.6	688,282	2.9
300~400만원	38,877	0.4	31,917	0.5	264,630	1.1
400~500만원	37,764	0.4	31,407	0.5	551,201	2.3
500~1,000만원	21,481	0.2	16,937	0.2	754,261	3.1
1,000만원 초과	13,031	0.1	11,700	0.2	1,025,651	4.3
합 계	9,319,840	100	6,931,650	100	24,002,955	100

주: 보험계약기준, 실제, 누적개념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2)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가) 제도 현황

-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15%,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2016년까지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400만원이었으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급여 1.2억원(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

<표 II -28> 연금계좌 소득구간별 세액공제율(*17년 1월 1일 이후)

소득 구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급여소득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15%
4천만원 ~1억원 이하 (급여소득 5.5천만원 ~1.2억원 이하)	400만원	12%
1억원 초과 (급여소득 1.2억원 초과)	300만원	12%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개인연금계좌의 요건

- 연금수령이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최소 연금지급 기간은 10년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연 1,800만원 이내
- 계좌이전 및 계좌승계가 가능

□ 개인연금계좌의 세제

- 납입시 세액공제,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5%, 연금수령시 5~3%의 세율
 - 만 55~70세 미만 연금수령 시 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 만 80세 이상 3%
 -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신고 대상

나) 운영 현황

-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살펴보면, 약 228만명이 가입하였고, 총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5조 9,551억원으로 평균 납입액은 261만원 수준

-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억원 초과 소득자의 평균 연금저축 납입액은 332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3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평균 연금저축 납입액은 100만원 미만

□ 연금저축은 전체 근로소득자 1,733만명 중 228만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13.2%에 불과

- 1억원 초과 소득구간의 가입률은 66%로 가장 높은 반면,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연금 저축률은 10% 미만
- 가입률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동시에 평균 연금저축 납입액도 증가

<표 II -29>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 인원	평균소득	연금저축 공제 대상			
			인원	가입률	평균 저축금액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359	0.01	0.14	0.00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2,939	0.14	0.26	0.01
2천만 이하	1,961,900	17.65	25,228	1.29	0.40	0.17
3천만 이하	2,930,090	24.84	113,252	3.87	0.97	1.85
4천만 이하	1,928,195	34.96	183,828	9.53	1.78	5.49
4.5천만 이하	737,622	42.71	123,029	16.68	2.12	4.38
5천만 이하	622,341	47.76	143,382	23.04	2.28	5.49
6천만 이하	988,334	55.23	329,979	33.39	2.48	13.76
8천만 이하	1,303,229	69.50	620,156	47.59	2.81	29.25
1억 이하	570,400	89.33	343,549	60.23	3.04	17.55
1억 초과	596,124	150.65	394,895	66.24	3.32	22.04
합계	17,333,394	32.70	2,280,596	13.16	2.61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 2016

-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을 살펴보면, 약 228만 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총세액공제액은 7,570억원으로 평균 세액공제액은 33만원 수준
- 1억원 초과 소득자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액공제액은 15만원 이하

〈표 II -30〉 2015년 근로소득자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총인원	평균소득	연금저축 공제			
			인원	비중	평균 세액공제	세액공제 비중
1천만원 이하	3,610,221	5.00	359	0.02	0.02	0.00
1.5천만 이하	2,084,938	12.80	2,938	0.13	0.04	0.02
2천만 이하	1,961,900	17.65	25,179	1.10	0.06	0.20
3천만 이하	2,930,090	24.84	113,001	4.96	0.15	2.19
4천만 이하	1,928,195	34.96	183,563	8.05	0.27	6.48
4.5천만 이하	737,622	42.71	122,910	5.39	0.32	5.17
5천만 이하	622,341	47.76	143,292	6.29	0.34	6.48
6천만 이하	988,334	55.23	329,851	14.47	0.33	14.49
8천만 이하	1,303,229	69.50	620,114	27.20	0.34	27.61
1억 이하	570,400	89.33	343,549	15.07	0.37	16.57
1억 초과	596,124	150.65	394,895	17.32	0.40	20.81
합계	17,333,394	32.70	2,279,651	100.00	0.33	100.00

자료: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IV.2016

라. 주요 특징에 따른 분류

-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산업진흥, 주택, 재정금융, 복지, 노동, 농업·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되고 있음
- 재정·금융분야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해외주식투자선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성보험, 연금계좌 등 6개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산업진흥분야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주택분야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농업·농촌 분야에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이 있음
- 그 외 노동분야에 우리사주, 복지분야에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음

<표 II -31> 분야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분야	금융상품
산업진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재정금융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성보험, 연금계좌
복지일반	비과세종합저축
노동	우리사주
농업, 농촌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일몰 도래 연도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2017년 말 5개의 과세특례제도가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고, 2018년에는 4개, 2019년에는 1개의 제도가 일몰 도래할 예정
 - 2017년 12월 31일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5개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이 도래할 예정
 - 2018년 말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4개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이 도래
 - 2019년 말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도래할 예정
-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계좌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몰이 정해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표 II -32〉 일몰 도래 연도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일몰 없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인 공제부금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조합 등 예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고배당기업 배당	조합 등 출자금		우리사주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출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성보험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개인연금계좌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가입대상자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포함하여 12개가 있으며, 종합소득자가 10개, 농어민이 8개, 비소득자가 8개 존재
 - 각 과세특례제도별 가입대상자 요건에는 소득한도 등이 설정된 경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저축·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많음

〈표 II -33〉 가입대상자별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비소득자	근로자	종합소득자	농어민
조합 등 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조합 등 예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공제부금	비과세종합저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고배당기업 주식배당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우리사주	조합 등 예탁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장기저축성보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개인연금계좌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연령별 가입가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15개의 과세특례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3개 제도는 연령 조건이 있으나, 그 외 과세특례는 가입대상에 대한 소득 요건과 같은 다른 요건은 있으나 연령 제한 등은 없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 등 예탁금은 만 20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은 노인이 가입대상자
 - 그 외 조합 등 출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과세특례제도의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34〉 연령별 가입가능 금융상품

만 15세 이상	만 20세 이상	65세 이상	거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출자금 소기업소상공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장기저축성보험 연금계좌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2. 해외사례

가. 미국²⁾

- 미국은 노후 준비, 의료비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과 같은 목적형 저축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2) 미국의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은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을 참고하여 작성함

-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개인퇴직계좌 (IRA)제도를 운영
- IRA는 기업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 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이 있음
- 의료비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은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가 있고, 소득공제 혜택 및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인출시 비과세 혜택이 부여
-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목적의 저축상품으로는 등록금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rogram, QTP) 및 Coverdell 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가 있고, 일정한 연방정부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의 상황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함

1)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IRA를 도입하여 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
 - IRA는 근로자은퇴소득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197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가입대상의 범위가 확대됨
 - 1981년 경제회복세법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70.5세까지 추가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가 확대됨
- IRA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
 - IRA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납입하는 계좌임에도, Simple IRA, SEP IRA는 사용자 지원이 있는 IRA로 확정기여형에 포함시키기도 함
- 각 유형별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음
 - Traditional IRA: 연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
 - Roth IRA: 연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
 - Simple IRA: 연 12,500달러(50세 이상 15,500달러)
 - SEP IRA: 총보수액의 25%와 53,000달러 중 작은 금액

- 각 유형별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
 - Traditional IRA은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 Roth IRA: 운용수익 비과세
 - Simple IRA: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 SEP IRA: 운용수익 과세이연

2) HSA(Health Saving Account)

- 미국의 HSA는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HSA는 연간 일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적격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후 남은 금액은 비과세 이자가 가산되어 65세 이후 계인퇴직계좌로 전환이 가능
- HSA는 소득공제가 큰 의료보험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고용주가 개설할 수 있으며, HSA에 납입하는 일정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사전공제로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저축에 대해 비과세
 - 가입 대상자는 HDHP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한 개인이나 고용주로 HDHP 외 다른 보험 또는 메디케어 비가입자
 - 다만, 적격 의료비는 여타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고,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 않아야 하며, 인출한 저축금을 의료비로 사용한 후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세될 뿐만 아니라 10%의 페널티가 부과
- 납입한도는 가족보험의 경우 연간 6,650달러,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3,350달러
 - 초과납입액은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미인출 시 10%의 소비세를 부과

3) ESA(Educational Savings Accounts) 등

- 미국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 지원을 위해 등록금저축기금(QTP), Coverdell ESA (Educational Savings Accounts), US Savings Bond 제도가 운영됨

- 개인이 부담하는 고등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정부나 사립대학교로 하여금 등록금 저축기금(QTP)을 운용하게 하는 제도
 - QTP는 개인이 지정된 수증자를 위하여 납입한 저축액과 그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수증자가 면세 상태에서 인출하여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적격 교육비를 초과하는 인출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고, 10%의 페널티가 추가로 과세
 - 납입자의 소득 기준은 없음

-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저축성 예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정된 수혜자(18세 미만)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가입대상자는 조정된 총소득이 11만달러 이하인자(합산신고 시 22만달러)
 - 각 수혜자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 최대 2,000달러까지 납입 가능
 - 초과납입액에 대해 6%의 소비세를 부과
 - 수혜자가 30세가 되기 전 적격 교육비 지출 목적으로 인출 시 운용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 적격교육비 초과 인출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10%의 페널티가 부과

- 연방정부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비교적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매도할 경우 그것을 연방정부가 직접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저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되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1989년 이후 발행된 채권으로, 24세 이상의 개인에게 발행되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등록금 등 적격 고등교육비용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연방정부에 채권 상환 요청을 할 경우
 - 채권 매입한도나 가입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은 없음

나. 영국³⁾

- 영국은 다수의 저축상품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보다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분된 저축지원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 영국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Junior ISA, ISA, Lifetime ISA와 자사주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SAYE가 있으며, 제도가 단순

1)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영국의 ISA는 저축률 제고와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
 - 가입 대상자는 예금형 ISA의 경우 16세 이상의 영국 거주자, 투자형 ISA의 경우 18세 이상 거주자
 -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
 - 은행, 건축조합, 신용조합, 공제회 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
- ISA는 현재 예금형 ISA, 투자형 ISA, 혁신형 ISA 등 3가지 유형이 있음
 - 예금형 ISA는 은행 예금 및 일부 NSI 상품이 편입 대상
 - 투자형 ISA는 주식, 신탁투자, 금, 회사채, 국채 등이 편입 대상
 - 혁신형 ISA는 P2P플랫폼 기반 대출로 2016년 4월 6일부터 적용
-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으며, 2016/2017년 기준 가입한도는 연간 15,240파운드
 - 예금형 ISA, 투자형 ISA, Innovative Finance ISAs 중 1가지 또는 2~3가지 유형에 나눠 저축 및 투자가 가능
 - 2017년 4월 6일부터 ISA의 연간 가입한도는 20,000파운드(약 2,800만원)로 인상될 예정

2) Junior ISA

- 영국의 Junior ISA는 조기 저축을 통한 미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운영되었던 Child Trust Fund Accounts를 폐지하고 2011년 11월에 도입

3) 영국의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은 영국 정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영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계좌의 명의는 어린이로 할 수 있으며, 저축은 친권자, 직계존비속 등이 할 수 있음
 - 사망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18세 생일이 경과한 후에 인출이 가능
 - 그리고 18세가 되면 Junior ISA에서 일반 ISA로 자동 전환됨
-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
- ISA는 현재 예금형 ISA, 투자형 ISA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 예금형 ISA는 은행 예금 및 일부 NSI 상품이 편입 대상
 - 투자형 ISA는 주식, 신탁투자, 금, 회사채, 국채 등이 편입 대상
-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으며, 2016/2017년 기준 가입한도는 연간 4,080파운드
 - 예금형 ISA, 투자형 ISAs 중 1가지 또는 2가지 유형에 나눠 저축 및 투자가 가능
 - 2017년 4월 6일부터 ISA의 연간 가입한도는 4,128파운드로 인상될 예정

3) Lifetime ISA

- Lifetime ISA는 주택 마련 또는 은퇴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
 - 가입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거나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자로 18~40세 사이의 거주자
 - 납입금액의 25%까지 정부가 매칭해주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
 - 은퇴시점(60세)까지 보유하거나 최초주택 구입시는 인출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 중도인출 할 경우 페널티가 부여
 - 단, 최소 12개월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은 영국 내의 45만파운드 이하에 한함
 - 다른 목적으로 중도인출 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액과 5%의 수수료가 부과됨

- 의무가입기간은 60세까지이고, 납입기간은 18~50세까지이며, 연간 가입한도는 4,000파운드

3) SAYE(Save as You Earn)

- SAYE는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급여 중 일부에 대해 저축하게 하는 저축상품으로 1980년에 도입
 -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상근이사
 - 근로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
 - 월 500파운드 한도

다. 일본⁴⁾

- 일본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등의 소액 예금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의 주택마련과 노후준비를 위한 재산형성을 위해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과 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액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장애인 등의 소액 예금

-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 및 저축 장려를 위해 장애인 등 소액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 제도를 운영 중
 - 가입 대상자는 일본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신체장애자수첩 교부자

4) 일본의 비과세·감면저축 상품은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310.htm>),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일본 정부 법령사이트(<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국민연금법에 규정하는 유족기초연금 수급자인 피보험자의 배우자, 과부연금 수급자 등
- 비과세 상품로 입금시 「비과세저축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 의무가입 기간이나 투자 가능기간은 없으며, 가입한도는 350만엔

- 한도액 초과로 입금시 모든 저축이 과세 처리됨
- 입출금의 제한이 없으며, 가입요건이 허위인 경우 해당 예금 등의 이자에 대해서 과세

□ 가입 대상 금융상품은 소액예금과 소액채권으로 한정

- 소액예금: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 신탁, 특정 유가증권
- 소액채권: 국채, 지방채

2)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 근로자의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 가입 대상자는 55세 미만 근로자(계약체결 시)이고, 주택취득자금을 마련을 위해 5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함
- 1인 1계좌가 허용되며, 저축상품 불입금 등으로 주택 소유목적의 취득, 주택의 증개축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

□ 의무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불입해야 하며, 가입한도는 근로자 재형 연금저축을 합하여 원금 550만엔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 주택 취득(신축, 구입), 근로자 사망 이외에 인출시 5년간 소급 과세

□ 가입 대상 금융상품은 직장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입금하는 적금, 신탁, 보험

- 직장을 통해 입금, 신탁 구매 또는 납입을 한 적금, 합동운용신탁, 유가증권, 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3)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 근로자의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 적용 대상자 및 요건
 - 55세 미만근로자(계약체결시)가 60세 이후 자신의 연금수급을 위하여 5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함
 - 60세 이후 연금지급 개시까지 출금 제한

- 의무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불입해야 하며, 가입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을 합하여 원금 550만엔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385만엔까지 비과세
 - 5년 이상 연금 지급방식 이외 방법으로 수령시 5년간 소급 과세

- 가입 대상 금융상품은 직장의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입금하는 적금, 신탁, 보험
 - 직장을 통해 입금, 신탁 구매 또는 납입을 한 적금, 합동운용신탁, 유가증권, 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 보험

4) 소액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NISA)

- 장기투자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14년에 도입하여 운영
 - 가입 대상자 및 요건
 - 국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거주자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는 비거주자

- 투자가능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이고, 연간 가입한도는 120만엔이며 이월은 불가
 - 1인 1계좌가 허용되며,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1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
 - 중도 인출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

-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상장주식, 투자신탁, ETF, ETN, REIT 등으로 투자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상품에 발생하는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장 5년간 비과세

-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ETF, REIT의 분배금은 증권 회사를 통해 수령할 경우에 한해 비과세

5) Junior NISA

- 투자 활성화 및 자녀의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
 - 가입 대상자 및 요건
 - 국내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등의 투자금액을 운용관리하는 친권자와 조부모

- 투자가능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이고, 연간 가입한도는 80만엔이고 이월은 불가능
 - 1인 1계좌가 허용되며, 금융기관 변경이 불가능
 - 만 18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나,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인출이 가능

-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상장주식, 투자신탁, ETF, ETN, REIT 등으로 투자상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상품에 발생하는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장 5년간 비과세
 -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ETF, REIT의 분배금은 증권 회사를 통해 수령할 경우에 한해 비과세

Ⅲ. 경제·사회 여건분석 및 주요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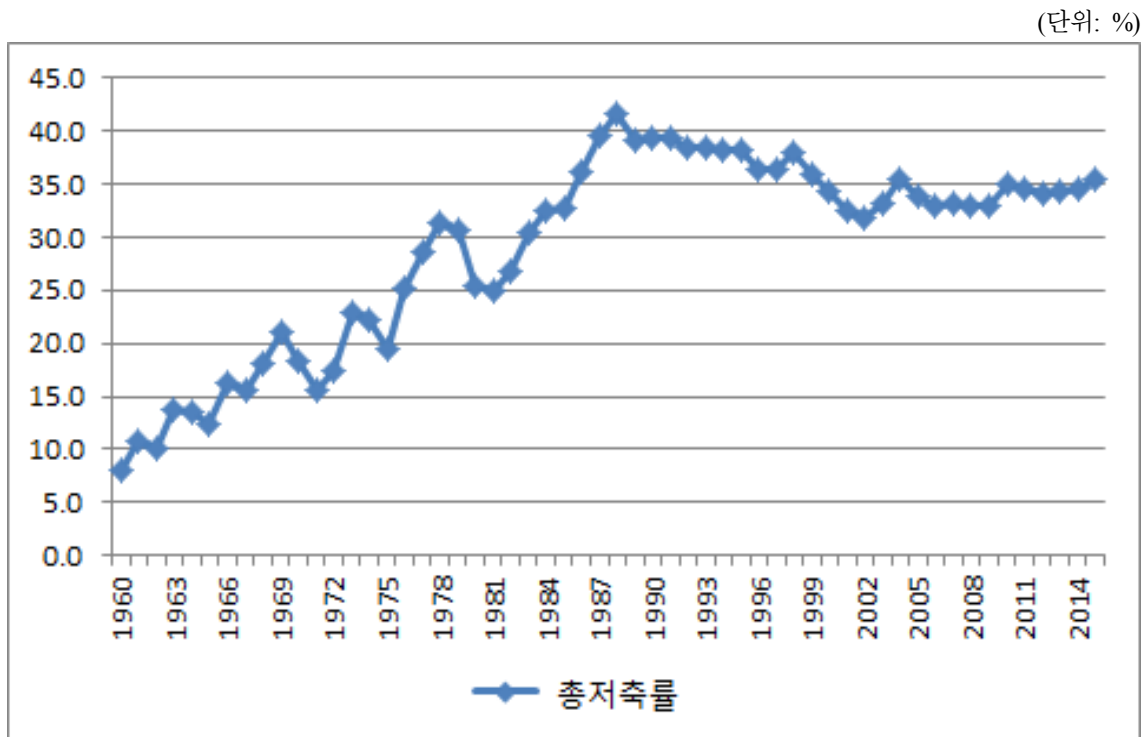
Ⅲ. 경제·사회 여건분석 및 주요 쟁점 분석

1. 경제사회 여건분석

가. 저축률

- [그림 Ⅲ-1]의 총저축률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60년대 10%에서 1990년대 40%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소폭 감소하여 30%대를 유지
 - 2000년대에는 가계저축률은 하락하였으나 기업저축률이 증가하여 총저축률이 30% 초반에서 유지되다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35.4%를 기록

[그림 Ⅲ-1] 총저축률 추이(196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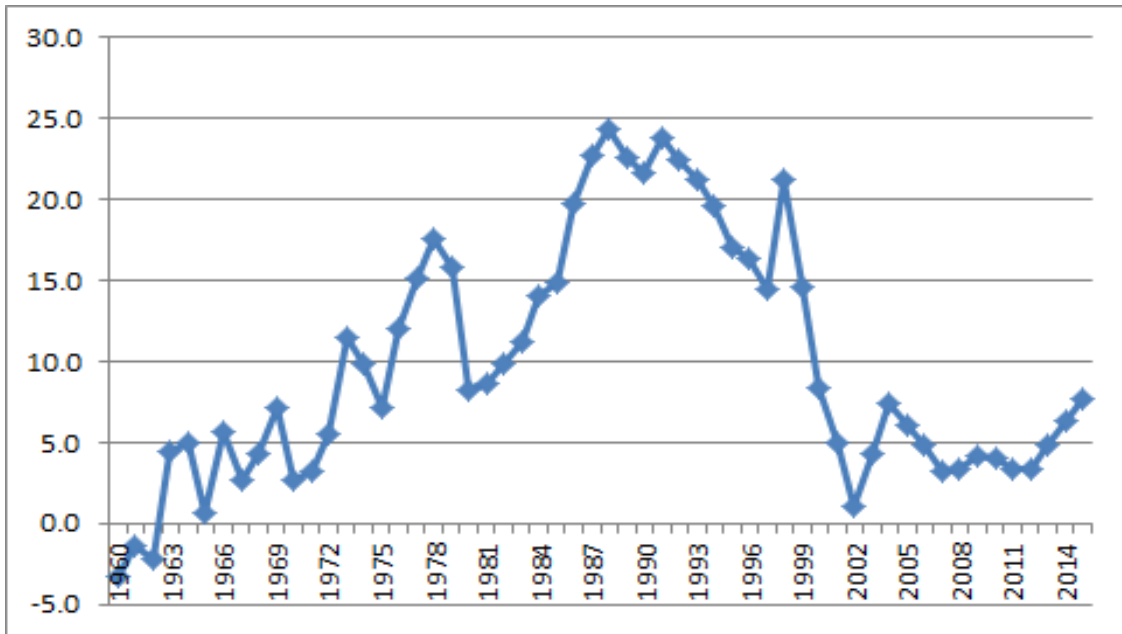


주: 총저축률은 제도부문별 총저축을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0.1.1 연간지표, 총저축률, 검색일자: 2017.01.31

-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60년 -3.3%에서 1988년 24.3%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2년 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증가하여 2015년 7.7%를 기록
 - 2007년 3.2%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9년 4.2%까지 증가한 이후 2011년까지 다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4.9%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7.7% 수준으로 증가
 - 이는 소득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거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
 - 최근의 가계저축률 상승은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

[그림 III-2] 가계 순저축률 추이(1960~2015년)

(단위: %)



주: 가계순저축률=[가계순저축/(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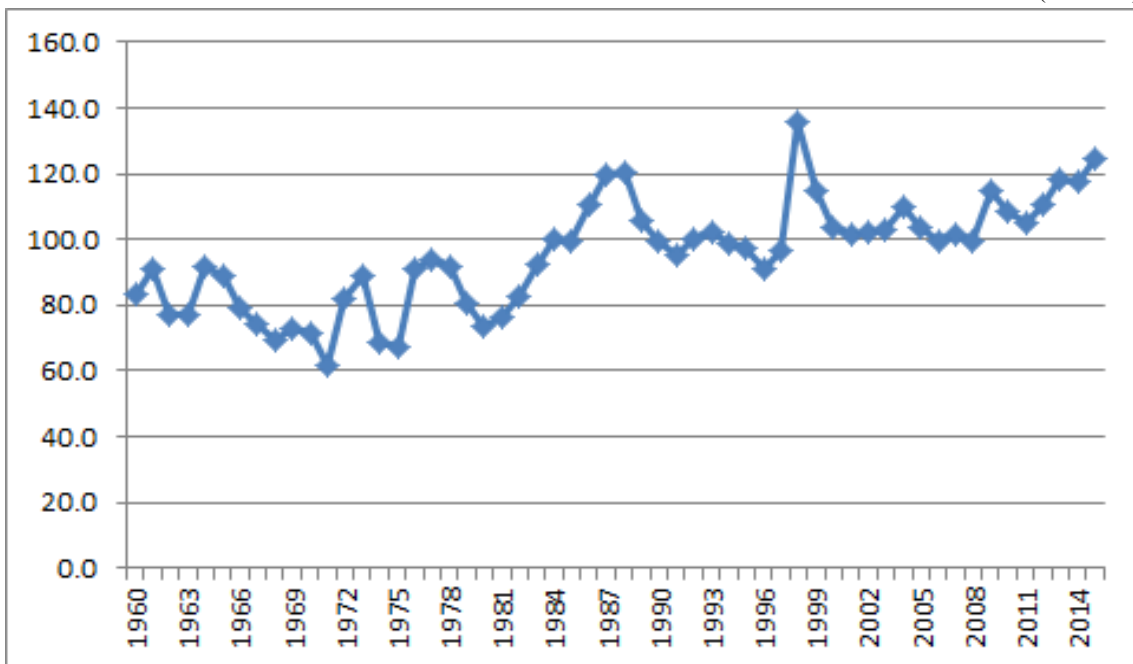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0.1.1 연간지표, 가계순저축률, 검색일자: 2017.01.31

- 저축을 투자의 재원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최근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자본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화로 인하여 가계저축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도 사실

- 또한 기획재정부(2014)도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이 소득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저축-투자갭, 적정 저축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총저축률은 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자립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대체로 100%를 하회하였으나, 이후에는 대체로 100%를 초과([그림 III-3] 참조)
 - 특히, 2012년 이후 투자재원 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24.4%를 기록

[그림 III-3] 투자재원 자립도 추이(1960~2015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0.1.1 연간지표, 투자재원 자립도, 검색일자: 2017.01.31

-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2015년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4.3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2.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I-1> OECD 회원국의 가계저축률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8.92	9.65	8.66	9.04	8.01	6.81
오스트리아	9.28	7.88	8.67	7.03	6.98	7.34
벨기에	8.11	6.56	5.71	4.94	4.61	4.18
캐나다	4.39	4.27	4.82	5.26	3.98	4.3
칠레	8.27	8.4	9.76	9.57	8.87	-
체코	7.61	6.03	5.99	5.62	6.59	6.63
덴마크	1.84	0.8	0.12	2.34	-1.79	4.41
에스토니아	4.16	4.82	4.09	1.15	4.84	4.3
핀란드	3.15	1.32	0.71	1.52	-0.12	-0.66
프랑스	10.35	10.04	9.46	8.74	8.75	8.89
독일	9.97	9.56	9.29	8.96	9.38	9.67
그리스	-6.9	-8.86	-10.91	-16.09	-15.33	-19.3
헝가리	3.35	4.14	2.58	4.34	5.7	4.33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3.15	1.32	0.71	1.52	-0.12	-0.66
이스라엘	10.35	10.04	9.46	8.74	8.75	8.89
이탈리아	9.97	9.56	9.29	8.96	9.38	9.67
일본	-6.9	-8.86	-10.91	-16.09	-15.33	-19.3
한국	3.35	4.14	2.58	4.34	5.7	4.33
룩셈부르크	6.4	3.57	3.48	0.97	-0.4	-
멕시코	4.2	3.71	1.98	3.61	3.66	3.03
네덜란드	2.15	2.64	1.36	0.03	-0.47	-
뉴질랜드	4.66	3.86	3.9	5.6	7.18	-
노르웨이	-4.43	-15.03	-15.56	-16.09	-14.73	-12.7
폴란드	8.77	6.87	6.06	5.36	-	-
포르투갈	4.89	5.79	7.17	7.3	6.25	6
슬로바키아	2.39	2.6	2.36	2.1	-	-
슬로베니아	3.95	5.8	7.09	7.59	8.23	10.42
스페인	2.38	-1.09	-1.11	-0.07	-0.54	-0.99
스웨덴	1.34	-0.92	-0.46	-0.24	-3.33	-4.01
스위스	-	3.94	2.75	3.67	3.91	-
터키	2.36	0.76	0.74	0.21	1.44	3.13
영국	6.11	5.45	2.78	5.41	5.37	6.94
미국	-0.83	-1.05	-2.08	-2.48	-2.4	-
OECD	4.27	3.26	2.73	2.51	2.36	2.23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5*, 2015

□ <표 III-2>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GDP대비 총저축)은 주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표 III-2> OECD 회원국 총저축률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7.9	9.1	8.3	7.4	5.5	3.5
오스트리아	8.3	8.7	8.2	7.6	8	7.8
벨기에	7.1	4.8	5	3.5	3.5	4
캐나다	3.1	5	4.8	5.3	5.4	2.5
칠레	24	22.5	22	20.7	20.9	20.3
체코	6	6.2	7.5	6	1.2	0.5
덴마크	9.5	11	9.6	8.7	4.4	6.9
에스토니아	11.9	11.5	11.2	8.4	6.3	6.9
핀란드	4.2	3.5	1.4	0.3	0.4	0.9
프랑스	2.4	3.1	1.7	1.4	1.3	2.5
독일	7.5	9.7	8.6	8.4	9.5	10.1
그리스	-11.1	-13	-10.8	-10	-9.8	-9.7
헝가리	2.9	3.5	2.9	7.1	7.8	7.7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1.7	2.5	2.5	5.6	8.1	-
이스라엘	8.4	9.6	8.4	10.2	10.8	11.3
이탈리아	-0.3	-0.2	-0.8	-0.5	0.6	0.6
일본	1.7	0.8	0.8	0.6	1.2	-
한국	16.5	15.7	15	15	14.9	15.8
룩셈부르크	-3.9	-2.5	-2.4	-2.5	-2.8	-2
멕시코	10.9	11.2	9.2	6.5	-	-
네덜란드	11.1	12.7	12.6	11.7	10.4	11.2
뉴질랜드	2.6	3.1	3.2	5.9	6.1	-
노르웨이	20.3	22.6	23.5	22.5	22.6	19.2
폴란드	5.2	6.9	6.7	7.1	7.6	9.1
포르투갈	-6.4	-4.7	-4.4	-2.2	-2.5	-2
슬로바키아	-0.4	-0.5	1.2	1.8	1.4	2.9
슬로베니아	1.8	1.6	-0.4	1.8	5.1	4.7
스페인	2.8	1.3	1.6	2.3	2.6	3.7
스웨덴	12.9	13.4	12.3	11.2	11.2	12.8
스위스	18.4	14.3	14.5	14.1	11.9	13.5
터키	-	-	-	-	-	-
영국	0.1	1	-0.7	-0.8	-0.4	0
미국	-0.8	-0.1	2	2.5	3.4	3.4
OECD	5.8	6.1	5.8	5.9	5.7	6.0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5*, 2015

나. 저금리

- 201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3.2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25% 수준
 - 수신금리는 2011년 3.69%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48% 수준

〈표 III-3〉 기준금리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준금리	4.50	5.00	3.00	2.00	2.50	3.25	2.75	2.50	2.00	1.50	1.25
수신금리	4.41	5.07	5.71	3.26	3.19	3.69	3.43	2.73	2.43	1.74	1.48
대출금리	5.99	6.55	7.17	5.65	5.51	5.76	5.40	4.64	4.26	3.53	3.37

주: 저축성 수신금리 및 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6 한국은행 기준금리, 4.2.1. 신규취급액 기준, 검색일자: 2017.01.31

다. 가계의 자산구성 현황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6,1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
 - 우리나라의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9,290만원이고, 이 중 저축액이 약 6,926만원, 전월세 보증금 2,363만원
 - 한편 평균 실물자산은 약 2억 6,788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약 2억 3,649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 26.0%와 실물자산 74.0%로 구성

<표 III-4> 소득분위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소득 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금액	36,187	12,036	19,981	28,100	39,905	80,911
	점유율	100	6.7	11.0	15.5	22.1	44.7
금융자산	금액	9,400	2,588	5,085	7,373	10,957	20,993
	저축액	6,942	1,627	3,408	5,053	7,819	16,801
	적립식	4,019	715	1,885	3,062	4,833	9,601
	예치식	2,461	841	1,287	1,631	2,429	6,117
	전월세보증금	2,458	961	1,677	2,319	3,139	4,193
실물자산	금액	26,788	9,449	14,896	20,727	28,948	59,918
	구성비	74	78.5	74.5	73.8	72.5	74.1
	부동산	25,029	9,260	14,177	19,375	26,831	55,500
	거주주택	14,244	6,396	9,187	12,701	16,479	26,454
	기타	1,759	188	718	1,352	2,117	4,418

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 가구 순자산 기준 5분위별 자료를 살펴보면,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나 금융자산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약 2,988만원이며 이 중 금융자산은 약 1,762만원에 불과한 반면, 5분위의 평균 자산은 약 10억 4,735만원이며 이 중 금융자산은 약 2억 3,310만원

<표 III-5> 순자산분위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소득 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금액	36,187	2,988	11,008	22,848	39,347	104,735
	점유율	100	1.7	6.1	12.6	21.7	57.9
금융자산	금액	9,400	1,762	4,640	6,753	10,530	23,310
	저축액	6,942	746	2,408	4,503	7,730	19,320
	적립식	4,019	622	1,840	3,128	5,001	9,505
	예치식	2,461	77	421	1,085	2,188	8,533
	전월세보증금	2,458	1,016	2,232	2,250	2,801	3,990
실물자산	금액	26,788	1,226	6,368	16,095	28,816	81,425
	구성비	74	41	57.8	70.4	73.2	77.7
	부동산	25,029	915	5,625	14,775	26,900	76,922
	거주주택	14,244	536	4,691	11,706	19,240	35,041
	기타	1,759	310	743	1,321	1,916	4,504

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 5분위의 자산 및 금융자산 점유율은 약 57.9%로 나타나,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의 약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가구주 연령별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규모가 증가하나 60대 이상의 경우는 50대에 비해 자산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미만의 금융자산 비중이 약 62.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의 금융자산 비중이 18.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

〈표 III-6〉 가구주 연령별 자산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연령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산	금액	36,187	8,750	25,730	36,564	44,302	36,648
	점유율	100	5.8	16.9	24.1	29.1	24.1
금융자산	금액	9,400	5,478	9,634	11,146	11,351	6,582
	저축액	6,942	2,091	5,050	7,778	9,389	5,608
	적립식	4,019	1,526	3,578	5,114	5,433	2,404
	예치식	2,461	506	1,192	2,106	3,270	2,881
	전월세보증금	2,458	3,386	4,583	3,368	1,962	975
실물자산	금액	26,788	3,273	16,097	25,418	32,951	30,066
	구성비	74	37.4	62.6	69.5	74.4	82
	부동산	25,029	2,663	14,530	23,245	30,552	28,976
	거주주택	14,244	2,094	10,147	14,249	16,009	15,787
	기타	1,759	610	1,567	2,173	2,399	1,090

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 가구주가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 자금 발생 시 주된 운영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부동산 구입이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음
 - 여유자금 운영방법으로 저축과 금융투자가 4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동산 구입(27.0%), 부채상환(22.7%) 순으로 나타남

<표 III-7>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시 주된 운영방법

(단위: %)

구분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구입	부채 상환	내구재 구입	기타	합계
2015	43.0	27.8	23.6	1.6	3.9	100
2016	44.3	27.0	22.7	2.0	4.0	100

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금융자산 투자 시 은행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직·간접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 소폭 증가
 - 은행 예금 75.6%와 저축은행 예금 6.0%를 더하면 안전자산인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약 82%를 차지

<표 III-8>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영방법

(단위: %)

구분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	개인 연금	주식 (직접투자)	수익증권 (간접투자)	계	기타
2011	65.4	5.6	17.6	1	3.4	4.5	0.3	2.2
2012	71.8	6.1	12	1.7	3.1	2.9	0.3	2.3
2013	70.3	8.5	11.8	1.8	2.2	2.5	0.3	2.5
2014	72.2	7.1	12.3	2.2	1.7	1.8	0.3	2.5
2015	73.1	6.7	10.8	2.3	2.4	2.3	0.2	2.2
2016	75.6	6.0	9.9	1.9	2.4	1.6	0.1	2.4

자료: 통계청, 「2012~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각년도.

-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안정성이 75.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인 수익성(12.0%), 접근성(6.3%), 현금화가능성(5.7%)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금융자산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수익성	안정성	현금화 가능성	접근성	기타	합계
2011	16.5	66.6	4.9	11.9	0.2	100
2012	12.2	75.9	5.3	6.7	0	100
2013	12.2	75.5	5.8	6.3	0.1	100
2014	12.4	75.1	5.4	6.8	0.3	100
2015	13.7	74.1	5.8	6.3	0.2	100
2016	12.0	75.9	5.7	6.3	0.1	100

자료: 통계청, 「2012~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각년도.

라. 노후준비 현황

-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이며, 향후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6.9%로 OECD 평균 24.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40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8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표 III-10> OECD 회원국의 노년부양비 전망

(단위: %)

국가	2010	2020	2040	2060	2080	2100
호주	22.1	28.2	38.1	44	49.8	60.3
오스트리아	29	32.3	51.5	54.2	54.6	62.4
벨기에	28.6	34.6	49	51.3	53.1	58.7
캐나다	22.5	30.2	44.7	49	51.2	59
칠레	15.3	20.1	38.8	55.5	64.5	69.3
체코	23.8	32.6	41.7	54	49.5	54.4
덴마크	28.2	34.7	44.6	43.8	48.4	54.9
에스토니아	28.5	33	41.4	51.3	47.9	50.2
핀란드	28.5	40.5	47.8	51.3	54.5	61
프랑스	28.6	36.5	49.1	50.3	55	61.3
독일	34.4	38.9	62.3	67.6	66.4	71.8
그리스	30.9	36.4	55.4	62.7	61.1	64.5
헝가리	26.7	32.2	39.1	51.9	49.5	53.5
아이슬란드	20.4	25.8	39.2	50.5	58	65.6
아일랜드	18.5	24.2	37.6	47.3	52.6	58.9
이스라엘	19.1	23.3	29.8	35.8	46	56
이탈리아	33.4	39	63	66.2	64.2	68.8
일본	38.9	52.7	70.4	80.4	76.9	77.4
한국	16.9	23.6	58.5	80.1	79.1	81.9
룩셈부르크	22.4	24.8	38.1	47.5	57.1	63.4
멕시코	11	14.1	27.3	44	62.4	70.3
네덜란드	25.3	34.7	53.8	52.6	56.5	61.5
뉴질랜드	22	28.2	41.4	46.7	54.3	63
노르웨이	25.2	30.1	41.4	44.4	49.1	57.1
폴란드	20.8	29.5	42.3	65.1	57.7	60.8
포르투갈	29.2	34.8	56.3	72.1	75.9	75.7
슬로바키아	18.7	25.5	38.8	60.1	53.2	56.5
슬로베니아	25.9	34	51.3	61	57.9	61.9
스페인	27.1	32.3	57.3	70.3	67.2	69.4
스웨덴	31.2	37.1	43.4	46.3	48	55.9
스위스	27.2	31.2	42.9	48.1	53.4	65.1
터키	12.3	15.1	27.9	45.3	57.9	64.9
영국	27.8	32.7	44.6	49.2	52.6	59.6
미국	21.8	28.6	39.1	41.8	46.2	52.4
OECD	24.8	30.9	45.5	54.2	56.8	62.6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2015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55만 4천명 중 고령자는 41만 9천명으로 전년 보다 40,405명 증가
 - 65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0%로 전년보다는 감소
 - 2011년 이후 고령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된 이후 고령 수급자의 증가율보다 총수급자 증가율이 더 높아 2015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표 III-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단위: 명, %)

	총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구성비	남자	여자
2010	1,458,198	391,214	26.8	106,723	284,491
2011	1,379,865	378,411	27.4	104,901	273,510
2012	1,300,499	376,098	28.9	107,156	268,942
2013	1,258,582	376,112	29.9	110,189	265,923
2014	1,237,386	379,048	30.6	114,731	264,317
2015	1,554,484	419,452	27.0	133,292	286,160

자료: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

- 2015년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2.3%에 불과
 - 국민연금 수령자는 2001년 65세 이상 인구의 약 37.3%인 약 247만명
 -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6%, 군인연금은 0.8%, 사학 연금은 0.6% 수준

〈표 III-12〉 2015년 공적연금 수급자

(단위: 명, %)

	65세 이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합계	2,802,062	2,412,775	16,222	373,065	42.3
국민연금	2,473,690	2,141,542	14,712	317,436	37.3
공무원연금	240,041	203,279	1,388	35,374	3.6
군인연금	50,594	34,223	82	16,289	0.8
사학연금	37,737	33,731	40	3,966	0.6

주: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각 연금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를 나눈 비율임

자료: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

□ 우리나라의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0.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 수준

<표 III-13> OECD 국가의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

(단위: %)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11
호주	3.1	3.6	3.8	3.3	3.5
오스트리아	11.4	12.3	12.2	12.4	13.2
벨기에	9.1	9.3	8.9	9	10.2
캐나다	4.2	4.6	4.2	4	4.3
칠레	-	6.7	7.3	3.7	3.2
체코	5.8	6.1	7.2	7	8.9
덴마크	5.1	6.2	5.3	5.4	6.2
에스토니아	-	-	6	5.3	6.9
핀란드	7.3	8.8	7.6	8.4	10.3
프랑스	10.6	12	11.8	12.4	13.8
독일	9.5	10.5	11.2	11.5	10.6
그리스	9.9	9.7	10.8	11.8	14.5
헝가리	-	-	7.6	8.5	10
아이슬란드	2.2	2.4	2.2	2	2.1
아일랜드	4.8	4.3	3.1	3.4	5.3
이스라엘		4.5	4.7	4.9	4.8
이탈리아	11.7	13.2	13.7	14	15.8
일본	4.8	6.1	7.3	8.5	10.2
한국	0.7	1.2	1.4	1.5	2.2
룩셈부르크	8.2	8.8	7.5	7.2	7.7
멕시코	0.4	0.7	0.8	1.2	1.8
네덜란드	6.7	5.8	5	5	5.5
뉴질랜드	7.3	5.6	4.9	4.2	4.9
노르웨이	5.6	5.5	4.8	4.8	5.4
폴란드	5.1	9.4	10.5	11.4	10.8
포르투갈	4.9	7.2	7.9	10.3	13
슬로바키아	-	6.3	6.3	6.2	7
슬로베니아	-	-	10.5	9.9	11.4
스페인	7.9	9	8.6	8.1	10.5
스웨덴	7.6	8.2	7.2	7.6	7.4
스위스	5.5	6.5	6.5	6.6	6.6
터키	2.4	2.7	4.9	5.9	7.5
영국	4.8	5.3	5.3	5.5	5.6
미국	5.8	6	5.6	5.7	6.7
OECD	6.2	6.7	6.8	7	7.9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2015

- 그러나 이는 2011년 OECD 회원국 평균인 7.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OECD(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2.4%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
 -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소득은 평균 소득 대비 약 60%로 OECD 회원국 평균 86.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5%로 OECD 회원국 평균 76%에 비해 낮은 수준
 -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5%로 34개국 가운데 2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자(평균 소득의 50%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4.3%로 22위를 차지

<표 III-14> OECD 빈곤율 및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국가	65세 이상 빈곤율	65세 이상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연금소득대체율 (평균소득의 50%)	연금소득대체율 (평균소득자)
호주	33.5	67.1	88.61	58
오스트리아	11.4	89.8	92.13	91.6
벨기에	10.7	77.2	64.17	60.9
캐나다	6.7	91.6	58.54	47.9
칠레	18.4		48.7	37.7
체코	2.8	81.1	93.06	63.8
덴마크	4.6	77.1	103.2	66.4
에스토니아	12.1	68.9	76.1	59.8
핀란드	7.8	83.6	66.6	63.5
프랑스	3.8	100.4	66.86	67.7
독일	9.4	86.9	53.4	50
그리스	6.9	97.5	82.9	72.9
헝가리	8.6	84.1	89.6	89.6
아이슬란드	2.8	92.7	90.52	76.7
아일랜드	6.9	87.9	70.1	42.2

국가	65세 이상 빈곤율	65세 이상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연금소득대체율 (평균소득의 50%)	연금소득대체율 (평균소득자)
이스라엘	24.1	96.5	85.72	68.8
이탈리아	9.4	95.6	82.19	79.7
일본	19.4		53.35	40.4
한국	49.6	60.1	64.3	45
룩셈부르크	3	106	98.4	88.6
멕시코	27	96.2	35.47	28.4
네덜란드	2	87.3	101.3	95.7
뉴질랜드	8.2	83.3	80.78	43
노르웨이	4.1	89.4	80.08	60.2
폴란드	8.2	90.3	54	52.8
포르투갈	8.1	96.3	87.71	89.5
슬로바키아	3.6	83.9	83.95	80.6
슬로베니아	15.8	86.3	57.62	57.4
스페인	6.7	95.9	89.11	89.5
스웨덴	9.3	85.7	56.7	55.8
스위스	23.4	75.6	61.4	46.9
터키	17.2	89.5	98	104.8
영국	13.4	82.3	51.66	28.5
미국	21.5	92.1	54.31	44.8
OECD	12.4	86.8	105.9	76.4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2015

2. 주요 쟁점 분석

가. 타당성 분석 관련 쟁점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측면에서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의 필요한지 여부

2) 제도 설계의 적절성 측면에 대한 검토

- (최소 보유기간) 최소 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큼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

- (가입한도) 가입한도는 조세지출 규모와 자산이동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가 없을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상당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은 대부분 자산가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재분배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지원대상 금융상품)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함해야 개인 투자자가 본인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세제지원 방식)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려움

3) 정책 대상의 적절성 검토

- 정책 대상에 맞는 소득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모든 개인이 소득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가구 내의 자산이동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

나. 효과성 분석 관련 쟁점

- 개인의 저축(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금융자산의 이동을 유발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명확하나 총저축 또는 순저축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음
 -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후수익률 증가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효과는 이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즉, 세제지원이 총저축에 미친 영향은 실증분석의 영역임

- 앞서 타당성 분석 관련 쟁점들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임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금은 (1) 기존 일반과세 금융상품의 저축(투자) (2) 축적된 금융자산 (3) 금융기관 대출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전 (4) 소비의 축소 등임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금이 (4)가 아닌, (1), (2), (3)에 의한 것이라면 총저축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수손실만 초래하여 오히려 재정 부담만 증가시킬 가능성

- 일반적으로 저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특정 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저축이 증가하였는지가 제도의 효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지가 그 효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임의심층평가에서는 각 개별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살펴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저축 또는 투자를 증가하였는지를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저축(투자)이 세제지원으로 증가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순저축이 증가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 금융자산(일반과세 금융자산, 비과세감면 금융자산), 소득, 소비 등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

IV. 타당성 평가



IV. 타당성 평가

- 본 임의심층평가에서 타당성 평가는 개별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를 하
기보다는 현행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
원방식의 적절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평가
 - 일반적인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은 개인 또는 가계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부
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 저축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지원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정책 수혜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

- 개별 과세특례제도는 저축률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아닌 다른 정책목표를 가진
제도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는 농어민, 노인, 서민,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지원을 위한 제도
 - 한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은 특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 따라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들 중 가장 일반적인 정책목표를 가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저축 지원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
 - 첫째, 정부가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 가장 일반적인 정책목표인 개인 또는 특정 계층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 지원
 - 둘째, 저축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의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
 -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평가

1. 정부 역할로서 적절성

가. 저축률 제고의 필요성

-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요
 - 가계 저축은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음
 - 또한 가계저축의 증가는 노후 소비재원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문의 재무여건을 개선하여 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부담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

- 이런 순환구조가 자본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재원이 외국인투자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용이해져 국내저축률과 국내투자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
 - Feldstein and Horioka(1980)는 국가간 자본이동으로 인한 저축률과 투자율 간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한편 손종철(2014)⁵⁾은 국가간 자본이동을 감안하여 고령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일부(약 9~20%)는 국가간 자본이동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5%를 유지하고 있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재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존재(김현정, 2014⁶⁾)

- 그러나 총저축률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서 있어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
 - 가계저축의 감소는 미래 소비 여력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수익률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 또한, 기업저축률 상승과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는 가계 저축률 하락은 자금중

5) 손종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본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2014-27. 한국은행, 2014. 9

6) 김현정, 「우리나라 저축률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은금융강좌, 2014.

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에는 가계저축률이 4% 미만에서 7.2%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민간소비의 부진과 일치하는 추세

□ OECD(2016.5)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노년층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 불구하고 가족부양을 통한 지원의 감소와 함께 노인소득에 대한 사적, 공적지원이 부족한 실정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률은 2015년 기준 32.1%에 불과하고, 그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23.5%에 불과
- 또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도 생산가능인구의 15%에 불과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이용한 저축의 확대를 통한 민간저축을 증대하여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⁷⁾

-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빠른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투입 감소 → 성장률 둔화 → 저축여력 축소

□ 또한 향후 경제성장률 제고를 감안하며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

- 송승주(2009.4)⁸⁾는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와 관계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힘
 - 개인 순저축률 1%p 상승이 투자율을 0.27%p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경상수지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또한, 개인순저축률 1%p 상승이 평균소비성향도 0.29%p 증가시킨다고 밝힘

□ 결론적으로, 가계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가계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의 증대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7)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5

8) 송승주,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9.4

- 또한 금융소득이 적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계층에는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특정 금융분야의 지원의 필요성

- 특정 금융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실패 영역 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한정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투자시장이 여전히 미성숙한 상황이고, 엔젤투자 또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현재 비우량채권(신용등급BBB+ 이하)의 회사채 시장의 발행 및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이미 성숙한 금융업권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고 이는 업권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
 -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업이 이미 성숙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투자전용 펀드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

2. 수행방법의 타당성

가. 지원방식의 타당성

- 저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신규저축을 장려하기보다는 기존 저축자산을 과세 특례 금융상품으로의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계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의무 저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저축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명확⁹⁾
-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이 존재
 - 소득공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음
 - 세액공제에는 개인연금계좌가 있음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합 등의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있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발생한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방식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 이는 개인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에서 나타난 현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저소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
-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보다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의 가입률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임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조합 등의 예탁금은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자의 가입률이 약 10%이고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음

9) 이상엽·한종석(2015.9)의 pp. 81~94에서는 저축 장려를 위한 주요 정책 및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요약 정리되어 있음.

- 반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투자조합회사 등의 출자 등은 근로 소득이 1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가입률이 매우 낮고, 전체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1% 미만

-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는 과세특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동일한 금융자산 간,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 간 손익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나. 정책대상 설정의 타당성

- 일반적으로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소득기준과 같은 가입 요건이 없이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단점이 존재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가입대상을 제한하더라도 그 대상 안에서는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
 - 한편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현재 운용되고 있고 과세특례 금융상품별 정책대상은 농어민, 노인, 일반 국민 등으로 정책대상자가 다양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정책대상자가 농어민,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소상공인, 우리사주조합 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등
 -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개인 거주자
- 또한 연령 조건이 있는 과세특례 상품도 존재하며 연령 조건에 일관성이 없음

- 조합 등 예탁금은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이나 실질적으로 만 20세 이상 개인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
 - 현행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5세 이상 근로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자, 농어민
 - 청년실업 통계 및 청년취업자 소득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기준은 15~29세
 -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청년 연령은 19~39세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인해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이 중복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존재
- 조합 등 예탁금,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고위험·고수익투자펀드,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
- 한편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개인연금계좌 가입률은 10% 미만이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개인연금계좌 가입률은 60% 이상임
- 만약 특정 정책대상자를 설정하더라도, 정책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
- 예를 들면, 금융소득 또는 금융자산이 많은 개인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친지 등을 통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을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근로,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시직 근로자, 주부, 미성년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차별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임시직 등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임시직 근로자 등은 세법상 가입이 불가

- 은퇴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계유지가 필요하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
- 한편, 임시직 근로자, 주부, 은퇴자는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할 수 있고, 해외투자 전용펀드 등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
 - 65세 이상의 은퇴자 및 주부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법정 의무 정년이 60세이고,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임금근로자의 경우 52세, 자영업자의 경우 53세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은퇴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됨
-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기존의 과세특례 상품을 통합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모든 개인 거주자가 차별 없이 한 개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청년형-일반형-장년형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투자자들의 소득이 금융기관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가입을 단순화하는 것이 가입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서류제출 의무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소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도 상존
 - 근로/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민은 농어업인 확인서, 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결론적으로 가입대상자를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으로만 가입이 쉽도록 하여 특히 서민들 또는 취약계층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

- 동시에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통합·재설계함으로써, 중복수혜를 제한할 필요

다.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도 과세특례 금융상품별로 상이하며,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존재
 -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경우 최소 1년,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됨
 - 반면, 비과세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은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좌를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보유기간이 길수록 결과적으로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됨
 -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형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지만 서민, 청년들의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소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조합 등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등에 비해 서민·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보유기간 3년은 상대적으로 긴 편임
- 또한 의무보유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거나 저축이 없었던 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
 - 비과세종합저축은 정책대상자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이 없어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비해서 조세지출 규모가 큼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또는 가계의 저축이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저축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 및 가계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가입률은 10% 미만
 - 장기저축성 보험 중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납입액의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재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노후준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노후 준비를 위해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외 과세특례제도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서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다만, 이는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거나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가정하에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할 필요
 - 이로 인해 서민, 중산층 등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라. 가입한도

- 각 과세특례 상품별 가입한도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저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상품의 한도는 자산이동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 납입한도가 2천만원,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납입한도 3천만원, 조합 등 예탁금 3천만원, 조합 등 출자금 1천만원
 -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일시납저축성 보험 1억 5천만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월 150만원 등
 - 가입한도의 규모에 따라 기존 저축자들에게 귀속되는 혜택이 결정됨
- 가입한도는 세수 손실이라는 조세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
- 추가가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

- 연간 한도 또는 월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이 금융자산을 “일반과세” 계좌에서 “과세특례” 계좌로 일시에 이전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점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총한도만 설정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들이 더 많은 자산 이동이 가능한 반면,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자영업자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이 많은 개인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존재
-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월 한도처럼, 짧은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입이 정기적인 개인에 비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음
- 즉 총한도만 설정하는 경우나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모두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
- 이는 가입한도까지 즉시 납입할 수 있는 개인이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
 - 총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기존의 축적된 자산을 이동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
 - 분기·월 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
-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고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음
-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할 경우, 가입한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발생하나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가입한도를 부여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아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비과세·감면 이자배당소득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총한도, 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

마. 투자대상 금융상품

-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과세특례별 투자 대상 금융상품이 상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반면, 조합 등의 예탁금,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등은 특정 상품에 한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
- 이에 따라 금융업종 간, 금융상품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
 -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로 인해 다른 금융업권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또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고, 시중은행도 문제 제기를 해왔음
- 특히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선호도가 낮은 개인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가진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 또한,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및 투자자원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외 주식, 국내·외 펀드, 채권, 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는 주식, 채권 등 일반 개인들의 직접투자대상 자산의 편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배당 목적의 주식 투자, 은행 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투자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동시에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검토

가. 여타 조세지출과 중복성

- 정부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저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도입이 되어 서로 조화롭지 못하며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13개가 항목이 있으며,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2개 항목이 있음
 - 일부 개인들의 경우에는 저축지원을 위한 유사 조세특례제도와 중복수혜가 가능
 -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가 가능

나. 재정사업과 중복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는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적인 성격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표 IV-1>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요건		농어민으로서 종사분야 외의 분야의 직전년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이하인자	
계약기간		3년 또는 5년	3년 또는 5년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 240만원
저축장려금	만기유지	계약기간 3년: 평균잔액의 2.7% 계약기간 5년: 평균잔액의 7.5%	계약기간 3년: 평균잔액의 6.3% 계약기간 5년: 평균잔액의 16.5%
	중도해지	3년 이상 저축: 0.54% 4년 이상 저축: 3.36%	3년 이상 저축: 3.75% 4년 이상 저축: 6.8%
	사망 등으로 인한 해지 (저축기간 1년 이내 제외)	계약기간 3년: 평균잔액의 2.7% 계약기간 5년: 평균잔액의 7.5%	계약기간 3년: 평균잔액의 6.3% 계약기간 5년: 평균잔액의 16.5%

자료: 국제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7.01.31

-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자산형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I,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희망키움통장 I: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대상자 등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 노력을 하고 있음(2010년 4월 도입)
 - 희망키움통장 II: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에 대해 1회 한하여 지원
- 내일키움통장: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수혜를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0.6)) × 0.85
 -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20만원의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29만원
-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적립)
-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 참여시 3년간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 참여시 3년간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 B형)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1:1 매칭 지원
 - 지원액은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자금 및 운영자금, ISA 계좌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등에 사용해야 함

<표 IV-2>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17년 1월 2일 기준)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중 중 총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 증인자)
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20만원(금융형)
금리(세전)	최대 연 3.3%	최대 연 3.3%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3인가구 (월소득 130만원) 기준 월평균 36만원 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가입기간	3년/반기 일시지급식	3년/반기 일시지급식	3년 /반기 지급식
추가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B 본인저축액의 1:0.3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차등지급 월 최대15만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주: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
 자료: 희망+내일키움 통장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summary01.jsp>), 접속일자: 2017.2.16.

- 보건복지부가 정책총괄 및 기획을 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은 요보호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1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 이내에서 만18세까지 지원
 - 대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 저축사용 용도: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 금융상품 내용: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적립금은 월 4만원 이하
 - 정부매칭지원금: 기본적립금 월 4만원 내 매칭

- 그 외 서울시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 중
 - 희망플러스통장: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50%을 서울시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매칭해주는 제도로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 또는 100%를 매칭해주는 제도

<표 IV-3> 서울시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

구 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18세 이상 서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40~60% 이하 가구로 최근 1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재직자	18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10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 거주자로,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최근 1년 6개월 이상 재직자
납입한도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또는 10만원	생계의료 급여 수여자 100%, 그 외 50%	50%
가입기한	3년	3년 또는 5년	2년 또는 3년
저축목적	주거, 창업, 교육비 마련	자녀 교육비 마련	교육비, 주거비, 졸업자금, 창업 운영자금
지원 조건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자료: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dream>,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접속일자: 2017.2.16.

V. 효과성 평가



V. 효과성 평가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통한 세제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
 - 효과성은 세제 지원이 저축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에 대한 금융자산탄력성 추정을 바탕으로 세제 지원에 따른 저축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형평성 측정

1. 목표 달성도

가. 선행연구

-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
 - 세제지원은 해당 금융상품의 세후이자율을 높이기 때문에 개별 경제 주체들은 세제 지원 금융상품에 투자할 유인 발생
 - 가입대상이 광범위하고 납입한도에 대한 제약이 적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경제 전체의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제 전체의 저축 증대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도모
 -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 축적이 필요하고 투자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축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 개별 경제주체 측면에서는 은퇴로 근로소득 마련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소비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퇴 시점 이전까지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 효과는 저축 증대 여부로 판단

- 세제 지원이 경제 전체나 개인 저축에 미치는 정도는 세후이자율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 (소득효과) 세제 지원(비과세·감면)은 세후수익률을 높여 미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주체는 세후소득 증가에 반응하여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킴
 - 세제지원 → 세후수익률(실효이자율) 증가 → 미래 가처분소득 증가 → 현재 소비 증가 및 저축 감소
 - (대체효과) 세제 지원(비과세·감면)은 실효이자율을 높여 미래 소비 한 단위를 더 많이 할인하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 가치로 측정된 미래 소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킴
 - 세제지원 → 실효이자율(세후수익률) 증가 → 미래 소비의 현재가치 하락 → 현재 소비 감소 및 저축 증대
 - 세제 지원(비과세·감면)이라는 동일한 정책이 미래 가처분소득과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대체 효과는 저축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남
 - 세제 지원이 저축에 미치는 총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측정은 실증분석으로 통해 분석 가능

- 세제 지원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크게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특정 세제혜택 상품(예,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
 - (경제 전체 연구)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하여 실질이자율이 총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
 - (특정 상품 연구) 특정 금융상품 보유자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상품 보유 이후 저축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

1) 경제 전체 연구 결과

- (경제 전체 연구 결과) 총소비와 실질이자율을 바탕으로 기간 간 대체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며, 추정된 대체탄력성은 대체로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지원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기간 간 대체탄력성에 의해 추정
 - 총소비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세후)이자율을 설명변수로 추정
 - 추정된 이자율의 계수가 양(+)이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율 증가가 총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은 감소

- Hall(1988)은 1959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기간 간 대체탄력성은 수익률 종류에 따라 0.066~0.346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0에 가깝게 매우 낮게 추정
 - 비내구재 실질 소비 자료와 다양한 세후 실질수익률을 바탕으로 추정
 - 실질수익률은 90일 국채 투자, 저축 계좌, S&P 500 주식 포트폴리오 등을 사용
 - 대체탄력성 추정 결과: 0.346(90일 국채), 0.271(저축 계좌), 0.066(주식)

- Attanasio and Weber(1995)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0.2~0.4로 나타남
 - CES 자료는 개별 가구 소비자료로 Hall(1988)이 사용한 총소비자료와는 달리 개별 가구를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소비 변화를 파악할 수 없음
 - 개별 가구의 소비 대신 코호트별 소비자료를 구축한 후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 프로파일을 구축해서 두 기간의 소비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추정

- 반면 Campbell(2003)은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간 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2) 특정 상품 연구 결과

- 미국의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인 IRA, 401(K)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연구들로 세후수익률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
 - IRA, 401(K)가 저축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Venti and Wise(1992), Venti and Wise(1995), Glenn and Skinner(1996) 등이 존재
 - 반면, Engen et al.(1994), Attanasio and De Leire(1994, 2002) 등은 신규 저축을 증대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분석
 - Engen et al.(1994)는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1984, 1985, 1986, 1990)을 분석한 결과 자산 이동에 대한 영향만 있고 저축률 증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Attanasio and De Leire(1994, 2002)은 Consumer Expenditure Survey(1982~1986, 1987~1991)을 분석한 결과 IRA 기여금은 기존 금융자산들로부터 자산이동을 통해서 충당되었고, 신규 저축 증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

- Engen and Gale(2000), Chernozhukov and Hansen(2004) 등은 IRA, 401(K)가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
 - Engen and Gale(2000)는 SIPP(1984, 1987, 1991)을 통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IRA, 401(K)가 가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저소득층에서 추가적인 자산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저소득층이 IRA, 401(K)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계층의 자산 증가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Chernozhukov and Hansen(2004)이 SIPP(1990)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이 적은 가 입자는 신규 저축이 증가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신규 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3) 기타 선행연구 결과

- 세후수익률과 저축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를 정리한 Honohan(2000)과 세제 지원이 경제 전체 저축과 특정 상품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Besley and Meghir(1998) 등이 있음

- Honohan(2000)은 기존 실증분석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세후수익률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
 - 세후수익률이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감소시킨다는 연구보다 많
이 존재
 - 그러나 추정된 계수들이 보통 매우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연구
들이 많이 나타남

- Besley and Meghir(1998)는 세제혜택이 개별 경제주체의 전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더라도 특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받는 저축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함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존재하는 납입한도를 의미
 - 예를 들어 조합 등 예탁금 상품 납입한도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납입한도
5천만원으로 설정
 - 특정 개인의 전체 저축량과 납입한도 크기에 따라 세제혜택이 저축량과 세제
혜택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가 달라짐
 - 금융자산이 납입한도보다 낮은 개인은 저축을 비과세 상품으로 모두 이동시
키면서 전체 저축에 대한 세후수익률이 이전보다 높아짐
 - 세후수익률이 증가에 따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크기에 의해 저축량 결정

- 금융자산이 납입한도보다 많은 개인은 비과세상품에 우선 저축하고, 남은 저축량
을 과세상품에 저축하면서 전체 저축에 대한 세후수익률이 증가하지만 전체 저
축에서 비과세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짐
 - 세후수익률의 변화가 크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크기에 의해 저축량이 결정
 - 전체 금융자산에서 비과세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경우 세후수익률 증가
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세상품에서 비과세상품
으로 자산 이동만 초래
 - 비과세상품에 대한 도입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자산 정도와 세후
수익률에 대한 탄력성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전체 저축에
대한 효과와 특정 상품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Engen, Gale, and Scholz(1994)는 과세이연 상품들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
 - 연금저축과 같은 과세이연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저축으로서 유동성이 매우 낮아 다른 과세상품을 대체하기 어려움
 - 개인이 연금저축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 선호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 소비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저축을 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은 목표 저축량을 감소시켜 민간저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공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나타남

- 세후수익률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 (1) 거시경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세후수익률 증가가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크기가 매우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 (2) 미국 IRA, 401(K)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들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 과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제도 전체가 경제 전체와 개인 저축 증가에 대한 분석과 개별 상품이 경제 전체 또는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한계가 존재
 - 개인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과 소비, 금융자산별 보유 현황,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보유 및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최소 두 시점 이상 존재하는 패널자료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특정 상품의 과세특례 효과 분석은 Besley and Meghir(1998)가 지적했듯이 자산 이동으로 인해 효과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영준·이철인(1999)이나 전병목·홍범교(2006)와 같이 실질 세후수익률이 총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나. 이론 모형

- 이자소득세율이 경제 전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 가계의 소비 최적화 문제를 구성
 - 이자소득세율이 경제 전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이질성을 고려하는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 대신 대표 가계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을 설정
 - 이질 가계 모형은 제도 변화가 경제 내 소득분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
 - 이론 모형은 소비와 저축, 이자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증분석에서 사용될 계량 모형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부문은 단순화
 -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점 간 의사결정 문제(intertemporal decision)로 시점 내 의사결정(intratemporal decision)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매 시점 노동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은 가정
 - 효용함수에서 노동공급에 따른 비효용은 고려하지 않고 효용이 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
 - 노동공급이 영향을 소비와 저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로를 고려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미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야 됨
 - 예를 들어 노동공급을 인적자본 축적(learning-by-doing)이 일어난 경우
 - 모형에 다양한 요소를 도입하면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추정 모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요소들은 대부분 2차 효과(2nd order effect)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후이자율 변화가 저축에 미치는 1차 효과(1st order effect)를 분석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음
- 매기 소득(Y_t)이 확률적으로 변하는 경제에서 대표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음

$$\max_{\{C_t, A_{t+1}\}_{t=0}^{\infty}} E_0 \left[\sum_{t=0}^{\infty} \beta^t u(C_t) \right] \quad (1)$$

$$\text{subject to } C_t + A_{t+1} = (1 - \tau_t)(Y_t + r_t A_t) + A_t \quad (2)$$

- 식 (1)은 무한기에 걸친 효용 극대화 문제로 β 는 시간선호율
 - 개별 경제주체는 유한기를 살지만 경제 전체 대표가계는 유한기의 경제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기를 사는 것으로 나타남
 - 유한기를 사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생애주기(life-cycle)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하고 경제 전체는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매 시점을 구성하고 있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generation model)을 활용
- 식 (2)는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기간 간 예산제약식(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로 (좌변)은 의사결정 변수(decision variable)인 소비와 다음 기 자산수준을 나타내고 (우변)은 이번 기 가용소득인 가처분소득과 현재 보유 자산을 나타냄
 - 모형에서 생산부문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매기 Y_t 수준의 소득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
 - 조세는 소득과 금융소득($r_t A_t$)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 τ_t 를 적용, 실제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세율을 총국세 또는 금융소득세로 구분 적용 가능
 - 저축은 다음 기 자산수준과 이번 기 자산수준의 차로 정의되며 소비와 일대일 대응

$$S_t = A_{t+1} - A_t$$

-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론 모형에서는 자산이 한 종류만 존재하나 다양한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자산 구성 가능
- 경제 전체에 G 종류의 자산이 존재하고 각 자산수준은 A_g 이고 각 자산의 수익률은 r_g 라고 하면 경제 전체 총자산과 평균 수익률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

$$A_t = \sum_{g=1}^G A_{g,t} \quad (3)$$

$$r_t = \frac{\text{자산총수익}}{\text{총자산}} = \frac{\sum_{g=1}^G r_{g,t} A_{g,t}}{\sum_{g=1}^G A_{g,t}} = \sum_{g=1}^G r_{g,t} \frac{A_{g,t}}{A_t} = \sum_{g=1}^G r_{g,t} \theta_{g,t} \quad (4)$$

- 식 (3)은 경제 전체 자산량은 각 자산의 총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
- 식 (4)는 평균 수익률이 자산총수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결정되는 것

을 의미하고, 이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산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

- 여기서 사용되는 가중치($\theta_{g,t}$)는 총자산 중에서 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A_{g,t}/A_t$)을 사용
- 경제 전체의 저축은 총자산의 증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개별 자산의 증감의 합으로 구성
 - 특정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저축 증가 여부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과세특례 상품으로 자산이동이 전체 세후이자율에 영향을 주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저축 변화가 일어남
 - 따라서 과세특례 상품의 가입대상이 넓고 납입한도가 커서 해당 상품으로의 자산이동이 평균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와 같은 분석이 의미를 가짐
 - '15년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조세지출 규모 중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같은 상품들 정도만 평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개인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다음과 같은 소비의 동태적 관계식(Euler Equation)을 도출

$$u'(C_t) = \beta E_0[(1 + (1 - \tau_{t+1})r_{t+1})u'(C_{t+1})] \quad (5)$$

- 식 (5)는 이번 기와 다음 기의 최적 소비량을 결정하는 식으로 (좌변)은 이번 기 소비 한 단위에 대한 한계효용을 의미하고 (우변)은 다음 기 소비 한 단위에 대한 기대 한계효용의 현재 가치를 의미
 - 현재 시점에서 이번 기에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좌변)에는 기대가 반영될 필요가 없음
 - 다음 기에는 이자율(r_{t+1})과 소득수준(Y_{t+1})이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가 반영되고, 주관적 할인율(β)과 세후 실질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좌변)과 비교

○ 세제지원에 따른 대체효과

-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해 세율 τ_t 가 인하되면 세후이자율 $((1-\tau_{t+1})r_{t+1})$ 이 증가하여 다음 기 기대효용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기간 간 한계효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이번 기 소비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비 조정이 일어남
- 소비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효용함수($u'(\cdot) > 0, u''(\cdot) < 0$)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번 기 한계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킴

○ 세제지원에 따른 소득효과

- 다음 기 예산 제약식에 따르면 세율 인하로 세후이자율이 증가하면 다음 기 가처분소득이 증가

$$C_{t+1} = (1-\tau_t)Y_t + (1-\tau_t)r_tA_t - (A_{t+1} - A_t) \quad (6)$$

- 다음 기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면 식 (5) (우변)의 기대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기 효용도 감소해야 됨
- 효용함수 형태로 인해 이번 기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시킴

○ 세제지원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인한 저축과 소비량의 변화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분석

□ 실증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가정

$$u(C) = \frac{C^{1-1/\gamma}}{1-1/\gamma} \quad (7)$$

$$u'(C) = C^{-1/\gamma} \quad (8)$$

○ 식 (8)을 식 (5)에 대입한 후 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도

$$E_0(\Delta \tilde{C}_{t+1}) = \gamma E_0[(1-\tau_{t+1})r_{t+1}] + \gamma(\ln \beta + \sigma^2/(2\beta)) \quad (9)$$

- 로그 소비 변화의 기댓값은 세후이자율 기댓값과 기간 간 대체탄력성의 곱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CRRA 효용함수에서 $1/\gamma$ 는 위험회피 정도로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위험회피도와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역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위험회피도가 높아지면 기간 간 대체탄력성은 당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이자율과 소비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1/\gamma$ 를 위험회피도 대신 기간 간 대체탄력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Hall(1988))
- 이론 모형에서는 소비 변화와 기대 세후이자율 간의 관계가 기간 간 대체탄력성으로 나타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서 기대 세후수익률의 계수값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를 측정

[참 고] 식 (9) 유도과정

- 식 (8)에 식 (5)를 대입

$$C_t^{-1/\gamma} = \beta E_0 [(1 + (1 - \tau_{t+1})r_{t+1}) C_{t+1}^{-1/\gamma}]$$

- 양변에 로그를 취함

$$(-1/\gamma)\ln C_t = \ln\beta + \ln E_0 [(1 + (1 - \tau_{t+1})r_{t+1}) C_{t+1}^{-1/\gamma}]$$

- (우변)에서 로그를 기댓값 안으로 넣기 위해서 세후이자율과 소비의 결합분포가 log normal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begin{aligned} (-1/\gamma)\ln C_t &= \ln\beta + E_0 \ln [(1 + (1 - \tau_{t+1})r_{t+1}) C_{t+1}^{-1/\gamma}] + \frac{\sigma^2}{2\gamma} \\ &= E_0 [\ln(1 + (1 - \tau_{t+1})r_{t+1}) + (-1/\gamma)\ln C_{t+1}] + (\ln\beta + \sigma^2/2\gamma) \end{aligned}$$

- 로그 세후이자율에 approximation $\ln(1 + (1 - \tau_{t+1})r_{t+1}) \approx (1 - \tau_{t+1})r_{t+1}$ 을 적용

$$(-1/\gamma)\ln C_t = E_0 [(1 - \tau_{t+1})r_{t+1}] + E_0 [(-1/\gamma)\ln C_{t+1}] + (\ln\beta + \sigma^2/2\gamma)$$

- $E_0 [(-1/\gamma)\ln C_{t+1}]$ 을 (좌변)으로 넘겨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_0(\Delta \tilde{C}_{t+1}) = \gamma E_0 [(1 - \tau_{t+1})r_{t+1}] + \gamma(\ln\beta + \sigma^2/(2\beta)) \text{ where } \tilde{C}_t = \ln C_t$$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료의 집계가 어려운 저축을 대상으로 직접 실증분석을 하는 대신 저축의 거울 이미지인 소비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함¹⁰⁾

○ 소비와 저축의 관계는 경제주체의 기간 간 예산제약식을 통해서 파악

$$C_t + A_{t+1} = (1 - \tau_t)Y_t + (1 + (1 - \tau_t)r_t)A_t \quad (1)$$

$$C_t + (A_{t+1} - A_t) = (1 - \tau_t)(Y_t + r_t A_t) \Rightarrow C_t = (1 - \tau_t)(Y_t + r_t A_t) - S_t \quad (2)$$

- 식 (1)은 일반적인 형태의 기간 간 예산 제약식으로 (좌변)은 현재 소비와 다음 기 자산, (우변)은 현재 가처분 소득 $((1 - \tau_t)(Y_t + r_t A_t))$ 과 현재 자산 (A_t) 으로 구성
- 식 (2)는 식 (1) (우변)의 현재 자산 (A_t) 좌변으로 이항시켜 정리한 것으로 현재 저축 (S_t) 은 다음기와 이번 기 자산의 차이 $(A_{t+1} - A_t)$ 로 표현
- 식 (2)를 현재 소비 (C_t) 로 표현하면 가처분소득에서 저축량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비와 저축은 음(-)의 일대일 관계를 가짐
- 따라서 이번기와 다음기 간의 저축 변화는 소비 변화로 측정되며 소비와 저축은 음(-)의 관계를 가짐(소비 증가는 저축 감소를 의미)

다. 추정 모형

□ 식 (9)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량 모형 구성

- 자료에서 로그 소비 변화나 세후이자율의 기댓값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변수로 대체하여 정리

$$\Delta \tilde{C}_{t+1} = \kappa + \gamma(1 - \tau_{t+1})r_{t+1} + \epsilon_{t+1} \quad (10)$$

where

$$\kappa = \gamma(\ln \beta + \sigma^2 / (2\gamma)) \quad (11)$$

$$\epsilon_{t+1} = [\Delta \tilde{C}_{t+1} - E_0(\Delta \tilde{C}_{t+1})] - [\gamma(1 - \tau_{t+1})r_{t+1} - E_0(\gamma(1 - \tau_{t+1})r_{t+1})] \quad (12)$$

- κ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항
- ϵ_{t+1} 는 잔차항으로 $(t+1)$ 기의 실제 로그 소비 변화와 세후수익률과 기댓값의 차이로 $E_0 \epsilon_{t+1} = 0$

10)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방법은 전영준·이철인(1999)와 전병목·홍범교(2006)의 방법론을 준용한 것임.

- 위의 계량모형은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할 경우 내생성 문제로 추정된 효과는 편향성(Bias) 문제가 발생 가능성
 - 잔차항(ϵ_{t+1})에 설명변수인 $(1-\tau_{t+1})r_{t+1}$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에 독립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
 - γ 를 OLS로 추정하면 추정치의 일치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통한 2SLS로 추정해야 됨
 -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Hall(1988)이 제시한 것처럼 전기 세후이자율($(1-\tau_t)r_t$)과 소비수준(C_t)를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종속변수가 2기간에 걸친 로그 소비의 차분 형태이기 때문에 도구변수가 다시 잔차항과 내생성이 발생
 - 따라서 세후이자율과 과거 소비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할 때 2기의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

- 전영준·이철인(1999)과 전병목·홍범교(2006)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계량 모형을 설정하여 세후이자율이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모형1)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

$$\Delta \tilde{C}_{t+1} = \alpha_0 + \alpha_1 \hat{r}_{t+1} + \epsilon_{t+1} \quad (13)$$

$$r_{t+1} = \beta_0 + \sum_{s=1}^3 \beta_{1,s} \tilde{C}_{t-s} + \sum_{s=1}^3 \beta_{1,s} (1-\tau_{t-s})r_{t-s} + \nu_{t+1} \quad (14)$$

- 식 (14)는 1st stage regression으로 3기 동안 로그 소비와 세후이자율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r_{t+1} 을 추정
- 식 (13)은 2nd stage regression으로 1st stage에서 추정된 \hat{r}_{t+1} 의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α_1 을 추정

- (모형2) 소득증가율은 반영하는 모형

$$\Delta \tilde{C}_{t+1} = \alpha_0 + \alpha_1 \hat{r}_{t+1} + \alpha_2 \Delta \tilde{Y}_{t+1} + \epsilon_{t+1} \quad (15)$$

$$r_{t+1} = \beta_0 + \sum_{s=1}^3 \beta_{1,s} \tilde{C}_{t-s} + \sum_{s=1}^3 \beta_{1,s} (1 - \tau_{t-s}) r_{t-s} + \beta_2 \Delta \tilde{Y}_t + \nu_{t+1} \quad (16)$$

- Campbell and Makiw(1990)에 따르면 경제 내 유동성 제약을 겪는 경제주체 (borrowing constrained agents)들은 소비 성장률이 동기의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

라. 자료 및 추정 결과

- (자료) 1987년 1/4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세후이자율에 대한 소비변화율의 크기를 추정하며,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음

<표 V-1> 추정에 사용된 변수 출처 및 단위

변수명	출처	내용	단위
민간소비	한국은행	계절조정, 실질	십억원
가계소비	한국은행	계절조정, 실질	십억원
국내총생산(GDP)	한국은행	계절조정, 실질	십억원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	계절조정, 실질	십억원
총인구	통계청	연간	천명
회사채이자율	한국은행	명목	%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월별, 전년동월비	%
이자소득세율	조세재정연	연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0.2.2.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계절조정, 실질, 분기), 10.2.1.2 경제활동별 GDP 및 GNI(계절조정, 실질, 분기), 4.1.2 시장금리(월, 분기, 년), 7.4.2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전국, 특수분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주계별통계 - 인구·가구 - 장래인구추계 - 전국(2016) - (전국)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 (인구항목); 조세재정연구원, 이자소득세율 자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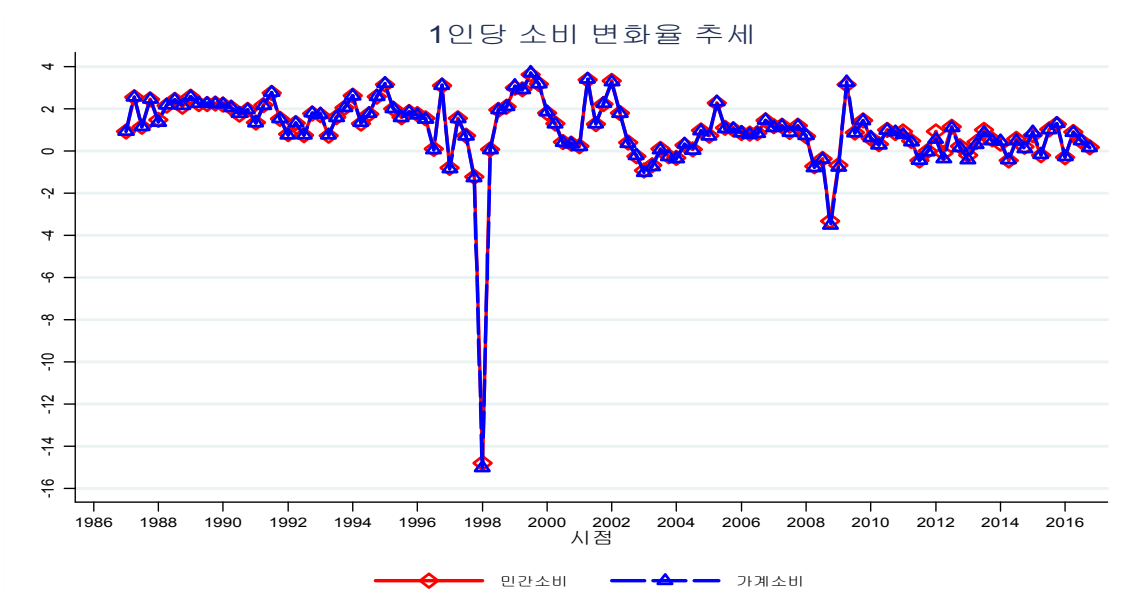
- 회사채 이자율 자료가 1986년부터 존재하여 자료가 1986년부터 시작
- 1인당 소비 변화율은 민간소비(또는 가계소비)를 총인구로 나누어 측정
 -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와 민간비영리단체 소비의 합
 - 가계소비는 민간소비에서 민간비영리단체 소비 제외
 - 총인구로 나누어 1인당으로 변경하여 측정
 - 로그 소비 차분 방식으로 변화율 측정
- 1인당 소득 변화율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를 총인구로 나누어 측정

- 회사채이자율은 시계열이 가장 길게 존재하는 3년 AA- 등급 사용
-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분기 평균으로 전환하여 사용
 - 명목으로 표시된 회사채이자율을 실질화하는 데 사용
- 이자소득세율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
 - 실효이자소득세율은 총이자소득세를 이자소득 과표로 나누어 계산
 - 총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 과표는 기재부 내부 자료를 이용
- 세후실질이자율은 회사채이자율을 실질화한 후 이자소득세율을 적용

$$\text{세후실질이자율} = (1 - \text{이자소득세율})(\text{명목회사채이자율} - \text{물가상승률})$$

- [그림 V-1]의 소비변화율 추세를 살펴보면, 두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소비 변화율 변동이 소득변화율 변동보다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
 -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 시점에서 급격한 소비 하락 경험
 - 두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소비변화율 변동이 소득변화율 변동보다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
 - 2000년까지 1.5% 수준이었던 1인당 소비 증가율이 2000년 이후 0.6% 수준으로 하락
 - 최근 잠재성장률이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항상소득 증가 역시 둔화되어 소비증가율 추세가 약화

[그림 V-1] 1인당 소비 변화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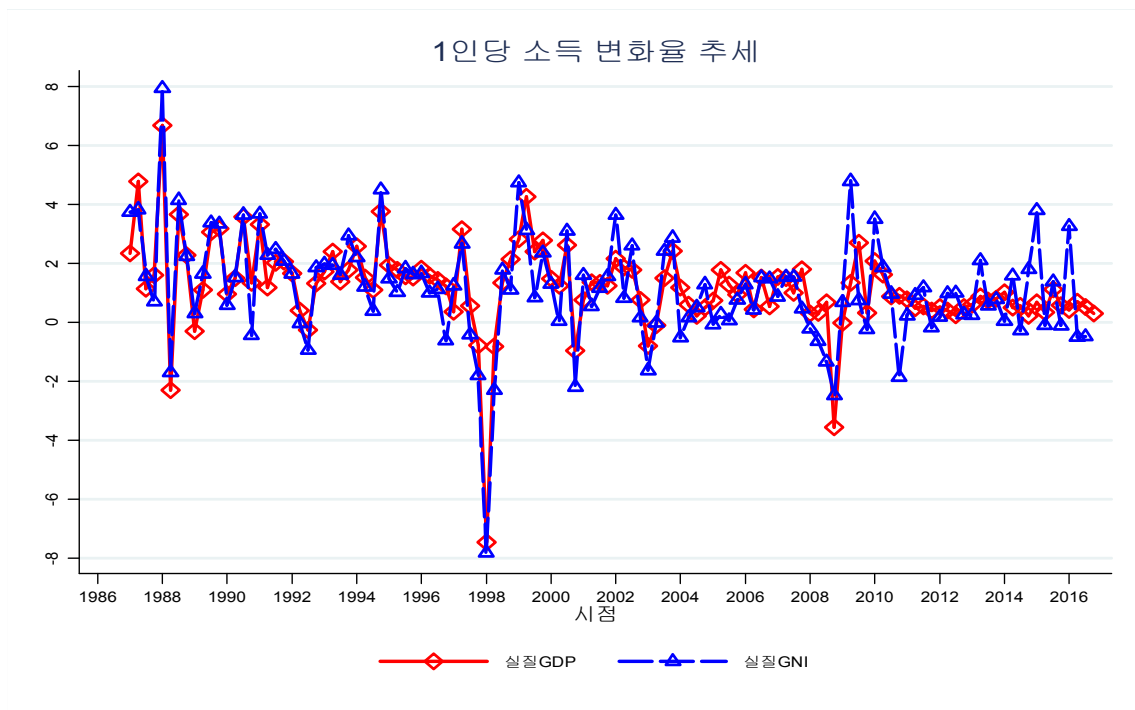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 [그림 V-2]의 소득변화율 추세를 살펴보면, 소득변화율은 소비변화율에 비해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0년까지 1.7% 수준이던 1인당 소득 성장률이 2000년 이후 0.8% 수준으로 하락
- 200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성장률의 변동이 유사했으나 2000년 이후에 국내총생산 성장률 변동은 적어졌으나 국민총소득 성장률의 변동은 덜 감소하여 두 변수의 성장률 변동이 괴리가 나타남

[그림 V-2] 1인당 소득 변화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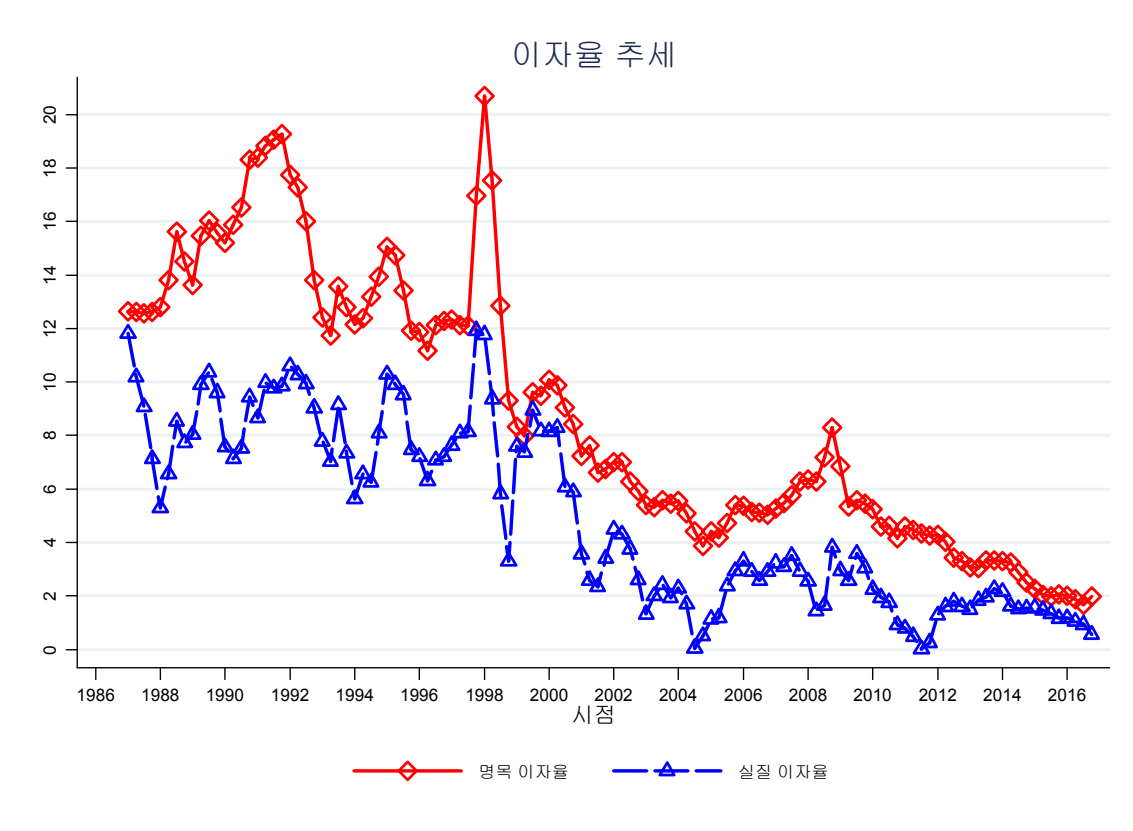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 [그림 V-3]의 이자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0년까지 명목이자율은 14%, 실질이자율은 8.4%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3분의 1 수준인 명목이자율은 5%, 실질이자율은 2.4% 수준으로 하락
- 2010년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명목이자율은 3.2%, 실질이자율은 1.4% 수준까지 하락
- 물가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간 차이가 감소하여 2010년 이후에는 양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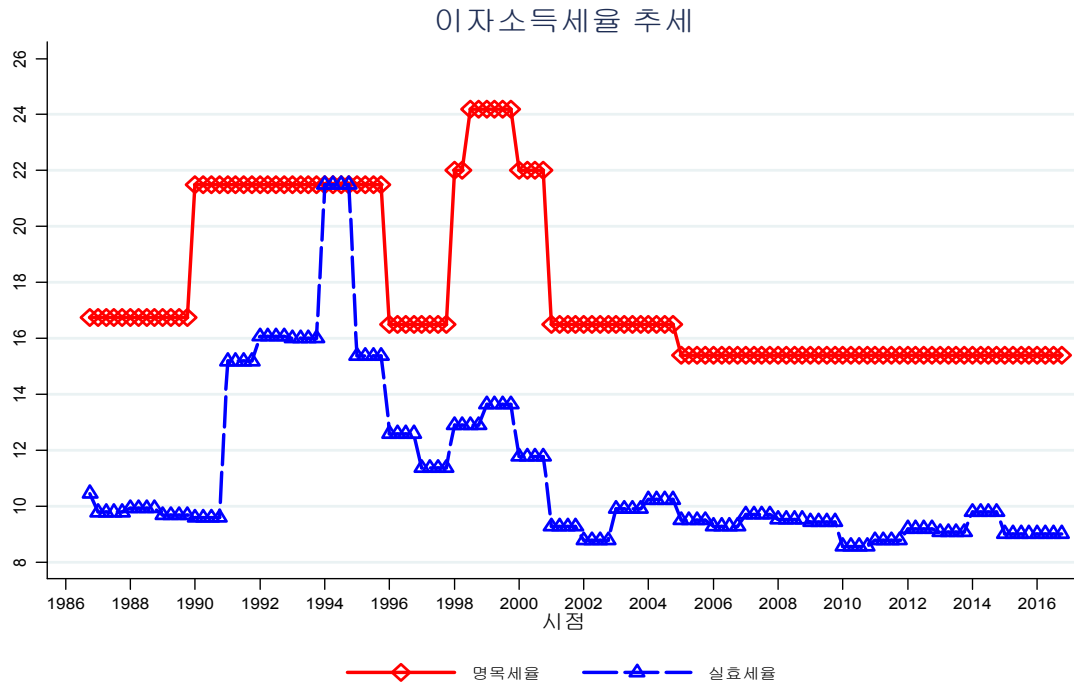
[그림 V-3]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자료: 저자 계산

- 이자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이자소득세를 과표(기재부 내부자료)로 나누어 측정
한 것으로 이자소득 과세율과 차이를 보임
 - 2005년 이후 금융소득에 대해 15.4%(=14%(국세) + 1.4%(지방세) 세율을 적용
했는데, 실효 세율은 평균 9.2% 수준으로 시점에 따라 변동이 나타남
 - 두 이자소득세율 간의 차이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정도에 의해
서 나타남
 - [그림 V-5]의 세율 간 격차를 살펴보면 평균 격차는 유사하나 2000년 이전까
지 격차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V-4] 이자소득세율 변화: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자료: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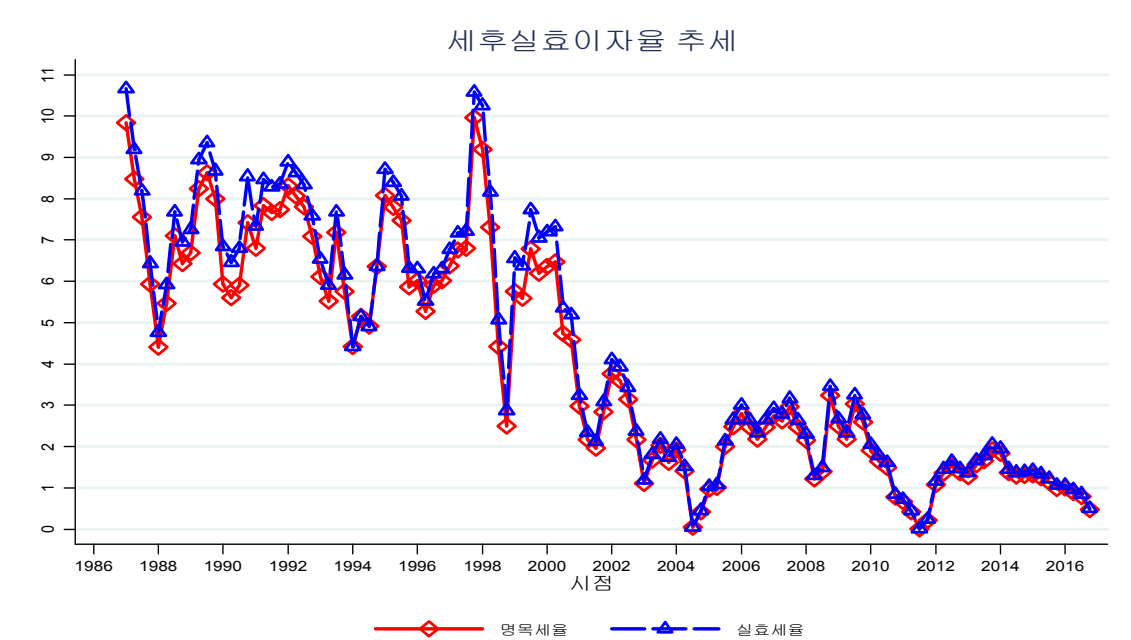
[그림 V-5] 이자소득세율 간 격차: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자료: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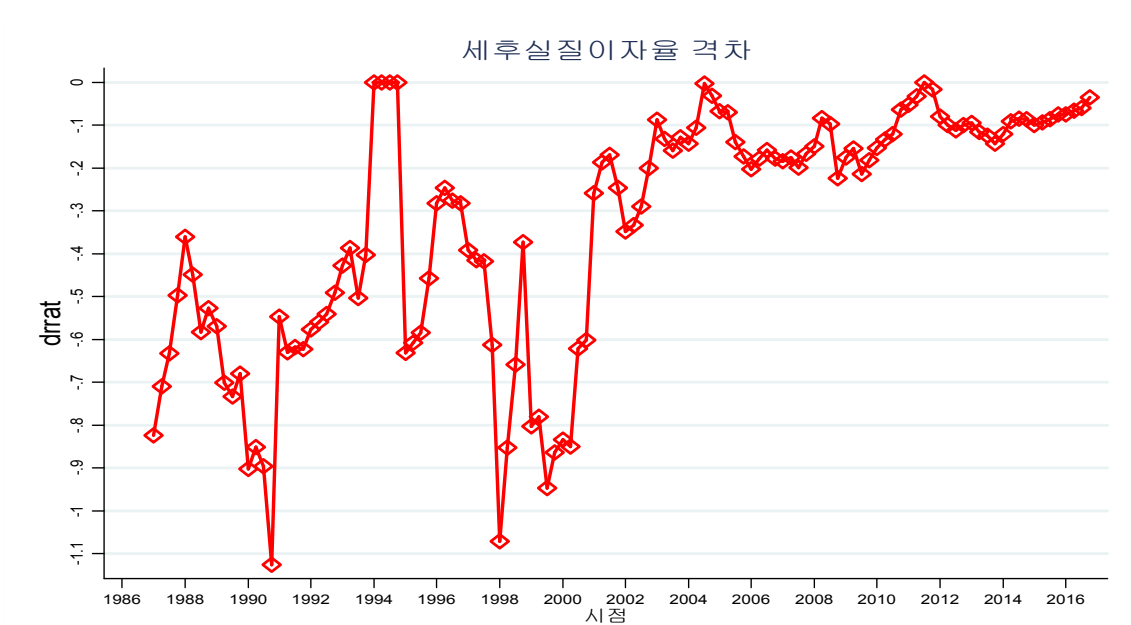
- [그림 V-6]의 세후 실질이자율 변화를 살펴보면, 세후 실질이자율 측면에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
- 세후 실질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1-금융소득세율)을 곱하여 측정

[그림 V-6] 세후 실질이자율 추세: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자료: 저자 계산

[그림 V-7] 세후 실질이자율 간 격차: 1987년 1사분기 ~ 2016년 4사분기



자료: 저자 계산

- 세후이자율에 대한 소비변화 탄력성에 대한 추정은 소비 변수와 세후 실질이자율 종류에 따라 4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2000년 이후 표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정
 - 소비와 세후이자율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추정하여 비교
 - (1) 민간소비 이용
 - 명목세율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후 실질이자율
 - 실효세율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후 실질이자율
 - (2) 가계소비 이용
 - 명목세율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후 실질이자율
 - 실효세율을 바탕으로 측정된 세후 실질이자율
 - 각 추정식에서 소득변화율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하는 경우로 구분
 - (모형1) 소득변화율 고려하지 않음
 - (모형2) 소득변화율 고려: 1인당 실질GDP 변화율 고려
 - (모형3) 소득변화율 고려: 1인당 실질GNI 변화율 고려
 - 추정방식은 OLS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2SLS 방식으로 추정
 - 2000년 이후 소비변화율과 세후실질이자율의 평균과 변동폭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2000년 이후 표본으로 한정하여 탄력성을 재추정하여 결과 비교

- <표 V-2>와 <표 V-3>에 정리된 민간 소비 변화를 이용하여 세후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용 세율의 종류와 상관없이 세후 실질이자율에 대한 소비변화탄력성은 모두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추정식에서 탄력성이 (+)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작용
 -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2SLS에서도 탄력성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전병목·홍범교(2006)와 유사한 결과
 - 또한, 소득변화율을 통제하면 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통제하는 것이 1인당 실질 GNI 성장률을 통제하는 것보다 탄력성이 0에 더 가깝게 추정

- 소비 변화가 대외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GNI는 대외여건을 반영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세후 실질이자율이 GNI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GDP를 사용한 것보다 추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GDP와 GNI 성장률의 추정 계수가 GDP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탄력성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표 V-2> 세후 이자율에 대한 민간 소비탄력성(1987~2016): 명목세율

	OLS			2SLS		
	(1)	(2)	(3)	(1)	(2)	(3)
세후이자율	0.094 (0.062)	0.002 (0.045)	0.038 (0.052)	0.109 (0.068)	-0.000 (0.049)	0.053 (0.056)
GDP 성장률		0.879** (0.081)			0.908** (0.082)	
GNI 성장률			0.587** (0.076)			0.600** (0.077)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5, ** p<0.01

<표 V-3> 세후 이자율에 대한 민간 소비탄력성(1987~2016): 실효세율

	OLS			2SLS		
	(1)	(2)	(3)	(1)	(2)	(3)
세후이자율	0.085 (0.057)	0.001 (0.041)	0.035 (0.048)	0.106 (0.063)	0.001 (0.045)	0.053 (0.052)
GDP 성장률		0.879** (0.081)			0.907** (0.082)	
GNI 성장률			0.587** (0.076)			0.599** (0.077)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5, ** p<0.01

□ <표 V-4>와 <표 V-5>의 정리된 가계소비 변화를 이용하여 세후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 민간소비 대신 가계소비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는 탄력성이 소폭 증가하지만 민간소비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표 V-4> 세후 이자율에 대한 가계소비탄력성(1987~2016): 명목세율

	OLS			2SLS		
	(1)	(2)	(3)	(1)	(2)	(3)
세후이자율	0.100 (0.063)	0.006 (0.046)	0.043 (0.053)	0.115 (0.069)	0.004 (0.049)	0.059 (0.057)
GDP 성장률		0.892** (0.083)			0.921** (0.084)	
GNI 성장률			0.597** (0.078)			0.609** (0.078)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5, ** p<0.01

<표 V-5> 세후 이자율에 대한 소비탄력성(1987~2016): 가계소비, 실효세율

	OLS			2SLS		
	(1)	(2)	(3)	(1)	(2)	(3)
세후이자율	0.090 (0.058)	0.005 (0.042)	0.039 (0.048)	0.112 (0.064)	0.005 (0.045)	0.058 (0.052)
GDP 성장률		0.892** (0.083)			0.921** (0.084)	
GNI 성장률			0.597** (0.078)			0.609** (0.078)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5, ** p<0.01

- <표 V-6>의 실질이자율 하락 이후(2001년 이후) 세후 이자율에 대한 소비탄력성 추정 결과, 표본 기간을 2001년 이후로 한정하여 추정한 결과도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이전의 결과와는 달리 추정된 탄력성의 크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GDP 성장률을 통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치가 0.20~0.40 수준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추정된 0.07~0.10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

- 2000년 이후 소비증가율과 소득증가율, 실질이자율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비 변화는 이자율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으로 판단

<표 V-6> 세후 이자율에 대한 소비탄력성: 2001~2016년

	OLS			2SLS		
	(1)	(2)	(3)	(1)	(2)	(3)
민간소비						
명목세율						
세후이자율	0.286 (0.146)	0.106 (0.120)	0.184 (0.143)	0.396* (0.172)	0.080 (0.141)	0.269 (0.170)
GDP 성장률		0.741** (0.123)			0.748** (0.122)	
GNI 성장률			0.288** (0.092)			0.276** (0.091)
실효세율						
세후 이자율	0.269 (0.135)	0.100 (0.111)	0.173 (0.133)	0.368* (0.159)	0.072 (0.130)	0.249 (0.157)
GDP 성장률		0.741** (0.123)			0.748** (0.122)	
GNI 성장률			0.287** (0.092)			0.275** (0.091)
가계소비						
명목세율						
세후 이자율	0.291 (0.150)	0.105 (0.122)	0.185 (0.147)	0.416* (0.177)	0.088 (0.144)	0.283 (0.174)
GDP 성장률		0.771** (0.125)			0.776** (0.124)	
GNI 성장률			0.303** (0.094)			0.289** (0.093)
실효세율						
세후 이자율	0.274 (0.138)	0.099 (0.113)	0.174 (0.136)	0.387* (0.163)	0.079 (0.133)	0.263 (0.161)
GDP 성장률		0.770** (0.125)			0.776** (0.124)	
GNI 성장률			0.302** (0.094)			0.288** (0.093)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5, ** p<0.01

- 추정된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07~0.10 수준으로 높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추정된 탄력성이 (+)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세후실질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변화율이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
 - 이자율 변화에 대한 소비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 소득변화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는 경우 추정치가 감소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상품이 총저축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표본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크기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보다 높게 나타남
 - 2000년 이후 실질이자율과 소득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
 - 비과세·감면 상품을 통한 세제혜택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2000년 이후 탄력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비과세·감면 상품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형평성 분석

- 형평성 분석은 효과성 분석과는 달리 과거 제도 변화에 따른 형평성 변화를 총량변수의 변화로 분석하기 어려움
 - 효과성 분석은 명목세율 변화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른 총저축 변화 정도를 과거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
 - 형평성 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금융자산이나 총자산의 분포나 불평등 지수(예, 지니계수)의 장기 시계열 자료가 필요
 - 금융자산이나 총자산의 불평등도 변화는 세율이나 이자율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개별 주체들의 자산 구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별 수준의 자료의 과거 자료가 필요

- 형평성 분석은 제도 변화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평균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각종 시계열 변수를 바탕으로 계량 분석을 하는 것은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효과성 분석은 경제 전체의 총저축의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경제 내의 대표 가계를 설정하여 이 가구의 최적화 문제로 바탕으로 추정식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형평성 분석은 경제 내에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제도 변화가 이들의 최적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형평성 분석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 소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변화가 이들의 자산보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
- 형평성 분석은 이자소득세율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 자산분포의 불평등 정도 변화를 비교하여 실시한 것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아님
- 자산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위 내 평균 총자산과 금융자산, 실효이자율 파악
 - 실효이자율 변화에 대한 자산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을 소득분위별로 추정
 - 탄력성은 총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분리하여 추정
 - 각 자산 내에서 탄력성은 OLS와 Fixed Effect(FE, 고정효과) 분석으로 추정
 - 이자소득세 감면에 따른 실효이자율 변화와 탄력성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자산변화 정도 측정
 - 이자소득세 감면 이후 변화된 자산을 기준으로 GINI 계수를 측정한 후 이자소득세 부과시 GINI 계수에서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
- 형평성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 추정 결과는 이상엽·한종석(2015.9)의 ‘Ⅳ.경제성 분석’의 일부를 발췌 정리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과세 대상 범위 변화에 따른 형평성 변화 정도를 분석

가. 자료

- 형평성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4년 자료를 이용
 - 실제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 (가구소득) 가구소득과 자산을 가구원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사용
 -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변수들을 바탕으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
 - 실물자산: 부동산과 기타동산으로 구성
 - 금융자산: 안전자산(safe asset)과 위험자산(risky asset)으로 구분
 - 안전자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적립식 저축, 예치식 저축
 - 위험자산: 적립식 펀드와 예치식 펀드, 주식, 채권, 기타(선물·옵션), 권리금, 기타저축
 - (실효이자율) 소득분위별 실효이자율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총금융소득을 총금융자산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측정

$$\begin{aligned} \text{실효이자율} &= \frac{\text{총금융소득}}{\text{총금융자산}} = \frac{\text{안전자산금융소득} + \text{위험자산금융소득}}{\text{총금융자산}} \\ &= r_{sf} \cdot \frac{\text{안전자산}}{\text{총금융자산}} + r_{rk} \cdot \frac{\text{위험자산}}{\text{총금융자산}} \end{aligned}$$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실효이자율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총금융 자산에 대한 평균 수익률을 의미
 - 금융상품별로 수익률이 다르고 소득분위에 따라 보유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유한 금융자산으로부터 얻는 금융소득이 다른 것을 반영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총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소득분위별 자산분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2013년 기준 소득분위별 자산 보유 현황은 중위값이 2억 6천만원 정도이고 평균값은 3억 3,700만원 수준
 - 평균적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보유 비율은 44.2%와 55.8%로 실물자산이 미국(29.3%)이나 일본(39.9%)보다 높은 수준

-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총저축액 비중은 59%로 전체 자산 중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의 비중은 25.9%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증가
- 금융자산의 중위값은 4,651만원, 평균은 6,684만원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보유액은 증가하지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표 V-7> 소득분위별 자산 보유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평균 소득	평균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전체	총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전체	부동산	기타
1	348.9	14,568	48.9	25.2	23.7	51.1	47.7	3.4
2	716.0	14,606	51.0	24.3	26.6	49.0	44.5	4.5
3	1,066.4	18,506	47.7	24.5	23.2	52.3	46.3	6.1
4	1,398.1	22,837	44.6	25.9	18.7	55.4	47.8	7.7
5	1,713.4	26,001	44.9	25.5	19.4	55.1	47.9	7.2
6	2,043.5	26,286	44.0	25.9	18.1	56.0	48.1	7.9
7	2,427.5	34,270	42.6	26.0	16.6	57.4	49.7	7.7
8	2,895.7	40,046	40.7	26.9	13.8	59.3	52.2	7.1
9	3,592.2	47,853	39.5	27.0	12.5	60.5	53.3	7.2
10	6,118.3	92,051	37.7	27.8	10.0	62.3	54.6	7.7
전체	2,231.6	33,698	44.2	25.9	18.3	55.8	49.2	6.6

출처: 이상엽·한종석(2015)의 <표 IV-1>과 <표 IV-3>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V-8>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만원, %)

소득 분위	금융 자산	안전자산					
		비율	보유율	보유자평균		전체평균	
				비율	금액	비율	금액
1	1,782	92.3	99	92	1,209	92	1,201
2	1,933	91.5	99	91	1,563	91	1,550
3	2,741	87.8	100	88	2,052	88	2,052
4	3,724	86.7	100	87	2,805	87	2,802
5	4,651	84.8	100	85	3,574	85	3,568
6	5,136	84.8	100	85	3,823	85	3,820
7	6,816	81.9	100	82	4,908	82	4,905
8	8,343	81.1	100	81	6,007	81	6,001
9	10,289	77.6	100	78	7,266	78	7,266
10	21,441	75.9	100	76	14,453	76	14,441
전체	6,684	84.4	100	84	4,770	84	4,760

출처: 이상엽·한종석(2015)의 <표 IV-5>를 바탕으로 재구성

- 금융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4.4%
 - 안전자산 보유액은 중위값이 3,568만원, 평균이 4,760만원
- 전체 가구 중 금융자산 보유 여부로 측정한 보유율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와 상관 없이 모든 가구가 금융자산을 보유
 - 안전자산 보유자의 안전자산 분포와 전체 표본 중 안전자산 분포가 거의 동일
 - 총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높다고 판단
- 실효이자율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실효이자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측정방법)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평균 수익률과 소득분위별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측정

- 안전자산 수익률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저축성 수신금리(잔액기준)으로 하고, 위험자산은 펀드(위험자산(1))와 주식(위험자산(2))로 구분한 후 국내 유형별 평균 연간 수익률과 코스피 평균 수익률 사용

<표 V-9> 자산 유형별 연평균 수익률 추이 비교

(단위: %)

	안전자산	위험자산(1)		위험자산(2)
		단순평균	가중평균	
2012	3.51	6.33	7.46	9.38
2013	2.88	3.81	2.29	0.72
2014	2.51	3.15	-1.95	-4.76

출처: 이상엽·한중석(2015)의 <표 IV-8> 재인용

□ 소득분위별로 추정된 실효이자율은 위험자산의 비중에 따라 달라짐

<표 V-10> 소득분위별 실효이자율

(단위: 만원, %)

소득분위	소득(2013)	금융자산(2013)	2012	2013	2014
1	968.9	1,782	4.1	2.7	2.0
2	1,366.5	1,933	4.2	2.7	2.0
3	1,588.5	2,741	4.3	2.7	1.7
4	1,764.0	3,724	4.5	2.7	1.7
5	1,972.4	4,651	4.5	2.6	1.5
6	2,242.3	5,136	4.7	2.6	1.6
7	2,398.5	6,816	4.7	2.6	1.4
8	2,774.2	8,343	4.8	2.6	1.3
9	3,002.6	10,289	4.9	2.5	1.1
10	4,239.5	21,441	5.2	2.5	1.0
전체	2,231.6	6,684	4.6	2.6	1.5

출처: 이상엽·한중석(2015)의 <표 IV-10> 재인용

나.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 추정

-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 추정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은 이자율 한 단위 변화 시 자산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epsilon = \frac{\Delta W}{\Delta r} \cdot \frac{r}{W}$$

- 현재 금융자산의 규모가 W 이고 직면하고 있는 실효이자율이 r 일 때,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ϵ 이면, 이자율이 1% 증가하면 금융자산은 $\epsilon \cdot (W/r)$ 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
-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자율 변화에 대해 금융자산의 변화가 더 민감하게 반응
-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탄력성 추정식

$$\ln W_{i,t} = \beta_0 + \sum_{g=1}^G \beta_{1,g} (D_g \cdot \ln r_{g,t}) + \beta_2 X_{i,t} + u_{i,t}$$

- $\beta_{1,g}$: 소득구간 g 그룹의 이자율에 대한 자산의 탄력성, 이자율 1% 변화 시 자산 수준이 $\beta_{1,g}$ % 변화하는 것을 의미
- $W_{i,t}$: 자산 수준은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총저축액을 균등화하고 소비자물가 수준(2010)으로 나누어 실질 수준으로 변환한 후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
- $r_{g,t}$: t 시점에서 소득분위가 g 인 가구의 실효이자율,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실효이자율 사용
- D_g : 소득구간 g 에 대한 더미변수
- $X_{i,t}$: 개별 i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주 나이, 학력수준, 균등화된 실질가구소득 수준 통제

- 각 연도에 따른 거시경제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포함
- 위의 추정식을 최소자승법(OLS)과 가구의 보이지 않는 특성(unobserved fixed effect) 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고정효과(Fixed Effect, FE) 방식으로 추정
-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 추정 결과
 - 금융자산과 총자산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 추정
 - 실효이자율 변화에 따른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에 대한 총자산의 탄력성 추정
-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에 대한 금융자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낮아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자율에 대한 금융자산 변화가 낮음
 - 고정효과 추정값들은 OLS 추정값보다 낮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낮아지는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 보유비율이 높고 실물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높고 실물자산이 유동성 제약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이 이자율에 반응하여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시키거나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적을 수 있음
 - 소득 10분위 경우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금융자산을 투자 목적보다는 원활한 금융거래나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이 유동성을 목적으로 보유할 가능성 존재
- 이자율 변화에 대한 총자산탄력성 추정결과 총자산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이자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규모 변화가 없는 것은 이자율 증가 시 신규 저축 증가보다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자산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자율 변화에 대한 총자산의 탄력성이 낮아지는 패턴은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OLS와 고정효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표 V-11> 소득분위별 이자율에 대한 금융자산탄력성 추정결과

변수명	금융자산				총자산			
	OLS		Fixed Effect		OLS		Fixed Effect	
	b	se	b	se	b	se	b	se
1분위	0.574**	0.02	0.193**	0.016	0.329**	0.017	0.048**	0.01
2분위	0.511**	0.016	0.174**	0.013	0.284**	0.015	0.031**	0.008
3분위	0.380**	0.015	0.143**	0.012	0.183**	0.014	0.030**	0.007
4분위	0.303**	0.015	0.125**	0.011	0.131**	0.013	0.020**	0.007
5분위	0.245**	0.014	0.107**	0.011	0.096**	0.013	0.014*	0.007
6분위	0.196**	0.014	0.091**	0.011	0.072**	0.013	0.008	0.006
7분위	0.152**	0.014	0.075**	0.011	0.046**	0.013	0.005	0.006
8분위	0.120**	0.014	0.067**	0.011	0.021	0.013	0	0.007
9분위	0.070**	0.015	0.047**	0.011	-0.015	0.013	-0.006	0.007
10분위	-0.015	0.016	0.032*	0.012	-0.082**	0.014	-0.011	0.007
가구소득	0.363**	0.031	0.119**	0.028	0.366**	0.028	0.060**	0.017
연령	0.114**	0.004	0.154	0.079	0.113**	0.003	0.052	0.048
연령제곱	-0.001**	0.0003	-0.002**	0.0002	-0.001**	0	-0.002**	0
고졸	0.390**	0.022	-	-	0.396**	0.019		
전문대졸	0.747**	0.03	-	-	0.769**	0.027		
대졸	0.831**	0.025	-	-	1.036**	0.022		
R-squared	0.98		0.165		0.989		0.292	
관측수	45,427		45,427		45,427		45,427	

주: **p<0.01, *p<0.05

출처: 이상엽·한종석(2015)의 <표 IV-11>과 <표 IV-12>을 바탕으로 재구성

- 비과세·감면 제도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하면 세후실질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축이 변화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자산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에서 세제혜택이 경제 전체 저축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
 - 총량변수 측면에서 저축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저축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총량변수는 변화가 없어도 분포가 변화하여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금융자산과 총자산의 변화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자소득세 과세 경제를 기준경제로 설정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자산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불평등도를 GINI계수로 측정하여 형평성 제고 여부를 분석
 - 소득분위별로 비과세·감면 상품 가입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세율 14%를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
 - 세후이자율은 소득분위별 이자율에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소득분위별로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해도 세후이자율은 달라짐
 - 탄력성은 금융자산과 총자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OLS와 FE 추정값을 모두 이용하여 측정

- 이자율에 대한 자산탄력성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제도는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개선 정도가 미미
 - 소득분위별 자산과 이자율, 탄력성은 <표 V-12>에 정리되어 있음

- 기준경제는 세율 14%를 모두 적용하는 경제로 상정하며, 금융자산의 GINI계수는 0.409, 총자산의 GINI계수는 0.318로 측정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 자산분포를 바탕으로 측정

<표 V-12> 소득분위별 자산, 이자율, 탄력성 현황

분위	총자산	금융자산	이자율	세율	세후이자율	탄력성			
						금융자산		총자산	
						OLS	FE	OLS	FE
1	14,568	1,782	2.70%	14.00%	2.32%	0.574	0.193	0.329	0.048
2	14,606	1,933	2.70%	14.00%	2.32%	0.511	0.174	0.284	0.031
3	18,506	2,741	2.70%	14.00%	2.32%	0.380	0.143	0.183	0.030
4	22,837	3,724	2.70%	14.00%	2.32%	0.303	0.125	0.131	0.020
5	26,001	4,651	2.60%	14.00%	2.24%	0.245	0.107	0.096	0.014
6	26,286	5,136	2.60%	14.00%	2.24%	0.196	0.091	0.072	0.008
7	34,270	6,816	2.60%	14.00%	2.24%	0.152	0.075	0.046	0.005
8	40,046	8,343	2.60%	14.00%	2.24%	0.120	0.067	0.000	0.000
9	47,853	10,289	2.50%	14.00%	2.15%	0.070	0.047	0.000	-0.006
10	92,051	21,441	2.50%	14.00%	2.15%	0.000	0.032	-0.082	-0.011
평균	33,698	6,684	2.60%	14.00%	2.24%	-	-	-	-

주: 탄력성 추정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은 0으로 처리
출처: 이상엽·한중석(2015)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형평성 분석

- 형평성 분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명목세율 14%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
 - 가입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에 대한 자료가 개별 경제주체별로 존재해야 가능
 -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도 변화에 초점

- 소득분위별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
- 이자소득세율 14%를 면제하는 경우 소득분위별로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증가액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짐
 - 이자소득세율 면제에 따른 금융자산이나 총자산의 증가액은 이자율 변화에 따른 자산 변화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소득분위별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이 비과세되더라도 세후 실효이자율의 변화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남
 -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율 비과세에 따른 자산 변화액이 낮아짐

<표 V-13> 이자소득세 비과세 경우 총자산 증가 정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총자산	OLS		FE	
		변화액	변화율	변화액	변화율
1	14,568.0	780.2	5.36	113.8	0.78
2	14,606.0	675.3	4.62	73.7	0.50
3	18,506.0	551.3	2.98	90.4	0.49
4	22,837.0	487.0	2.13	74.4	0.33
5	26,001.0	406.3	1.56	59.3	0.23
6	26,286.0	308.1	1.17	34.2	0.13
7	34,270.0	256.6	0.75	27.9	0.08
8	40,046.0	0.0	0.00	0.0	0.00
9	47,853.0	0.0	0.00	-46.7	-0.10
10	92,051.0	-1,228.8	-1.33	-164.8	-0.18

출처: 저자 계산

<표 V-14> 이자소득세 비과세 경우 금융자산 증가 정도

(단위: 만원, %)

소득분위	금융자산	OLS		FE	
		변화액	변화율	변화액	변화율
1	1,782.0	166.5	9.34	56.0	3.14
2	1,933.0	160.8	8.32	54.8	2.83
3	2,741.0	169.6	6.19	63.8	2.33
4	3,724.0	183.7	4.93	75.8	2.03
5	4,651.0	185.5	3.99	81.0	1.74
6	5,136.0	163.9	3.19	76.1	1.48
7	6,816.0	168.7	2.47	83.2	1.22
8	8,343.0	163.0	1.95	91.0	1.09
9	10,289.0	117.2	1.14	78.7	0.77
10	21,441.0	0.0	0.00	111.7	0.52

출처: 저자 계산

- 형평성 분석은 비과세대상을 소득분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불평등 지수가 변화하는 것을 분석
 - 불평등 지수는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GINI계수로 측정
 - 소득분위는 1분위가 가장 소득수준이 낮고 10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음
 - 이자소득세율 14%를 1분위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고소득층으로 확대 적용할 때 GINI계수의 변화를 분석

-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GINI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면 GINI계수가 감소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면 감소 폭이 적어짐
 - 소득분위별로 이자율 변화에 대한 자산 변화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율 감면으로 세후실효이자율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자산액이 크기가 다름

- 불평등 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경제를 전 계층에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과세 대상의 범위가 저소득분위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할 때 GINI 계수를 측정한 후 전 계층 과세 시 GINI 계수와 비교
- <표 V-15>에 따르면 세후실질이자율 변화에 따른 반응 정도(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 시 자산 불평등의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에 따른 자산 증가액이 높아 불평등 개선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소득분위가 7분위를 넘어서면 탄력성의 크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한 세후실효이자율 변화에 반응하지 않음
 - 따라서 자산 불평등도 개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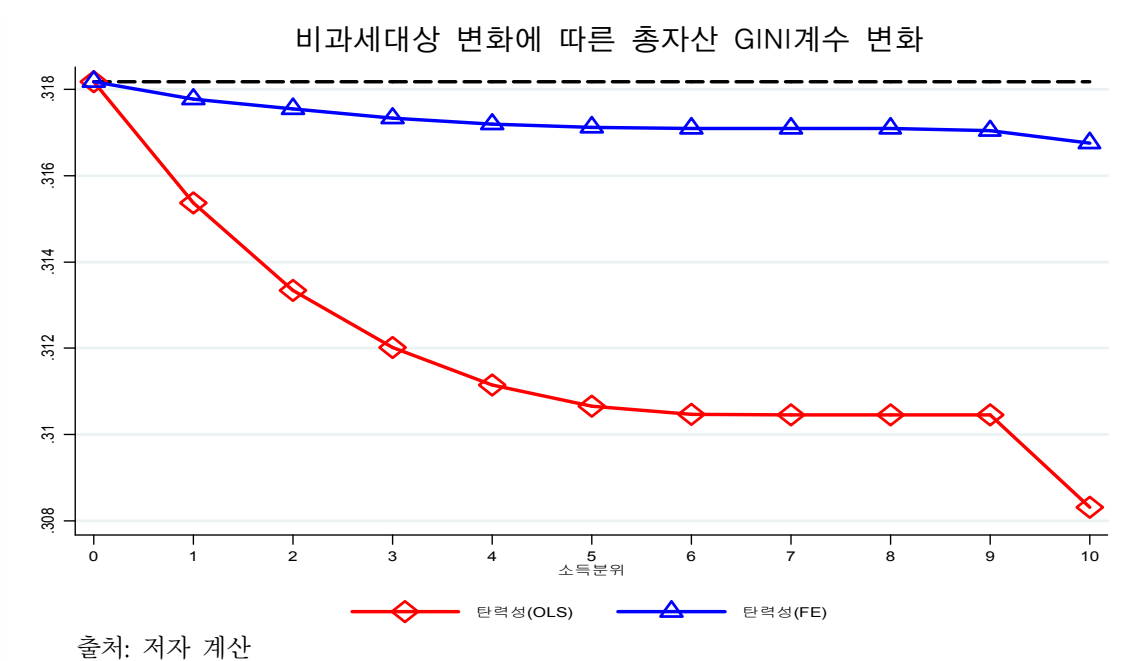
<표 V-15> 비과세 대상 변화에 따른 GINI계수 변화

소득 분위	총자산				금융자산			
	OLS		FE		OLS		FE	
	GINI	변화율	GINI	변화율	GINI	변화율	GINI	변화율
전계층 과세	0.31819	0.00%	0.31819	0.00%	0.40863	0.00%	0.40863	0.00%
1	0.31537	-0.88%	0.31777	-0.13%	0.40538	-0.80%	0.40754	-0.27%
2	0.31335	-1.52%	0.31755	-0.20%	0.40273	-1.44%	0.40663	-0.49%
3	0.31202	-1.94%	0.31733	-0.27%	0.40046	-2.00%	0.40577	-0.70%
4	0.31115	-2.21%	0.31720	-0.31%	0.39856	-2.47%	0.40497	-0.90%
5	0.31065	-2.37%	0.31712	-0.33%	0.39719	-2.80%	0.40436	-1.04%
6	0.31046	-2.43%	0.31710	-0.34%	0.39647	-2.98%	0.40402	-1.13%
7	0.31046	-2.43%	0.31710	-0.34%	0.39623	-3.03%	0.40389	-1.16%
8	0.31046	-2.43%	0.31710	-0.34%	0.39648	-2.97%	0.40402	-1.13%
9	0.31046	-2.43%	0.31705	-0.36%	0.39700	-2.85%	0.40436	-1.04%
10	0.30832	-3.10%	0.31676	-0.45%	0.39700	-2.85%	0.40518	-0.84%

출처: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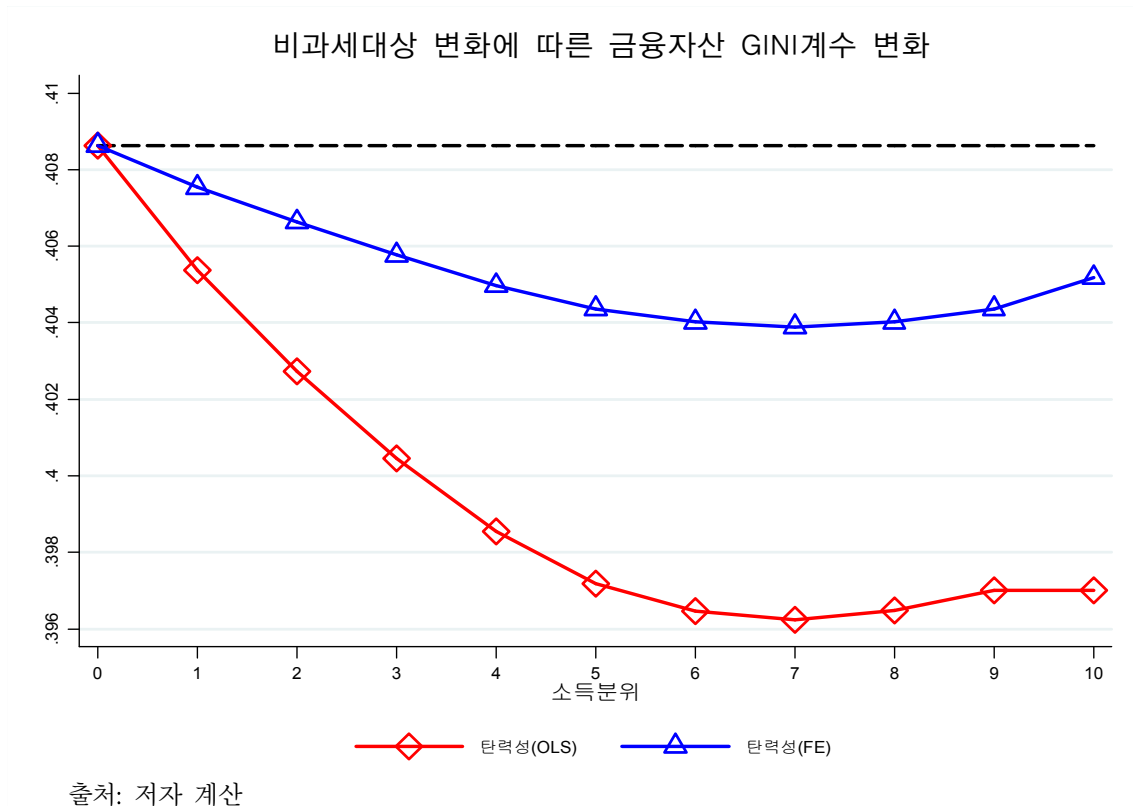
- [그림 V-8]은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총자산의 GINI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확대에 따라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분위 5분위 보다 높은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은 형평성 개선에 영향이 크지 않음
 -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비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될 때까지는 GINI계수 개선 정도가 급격히 나타나지만 소득 6분위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GINI계수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음
 - 고정효과(FE)로 추정된 탄력성의 수준이 OLS보다 낮기 때문에 GINI계수 개선율이 OLS 추정 탄력성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개선율 추세는 OLS와 FE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탄력성이 (-)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소득 10분위까지 확대할 때 GINI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8]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총자산 GINI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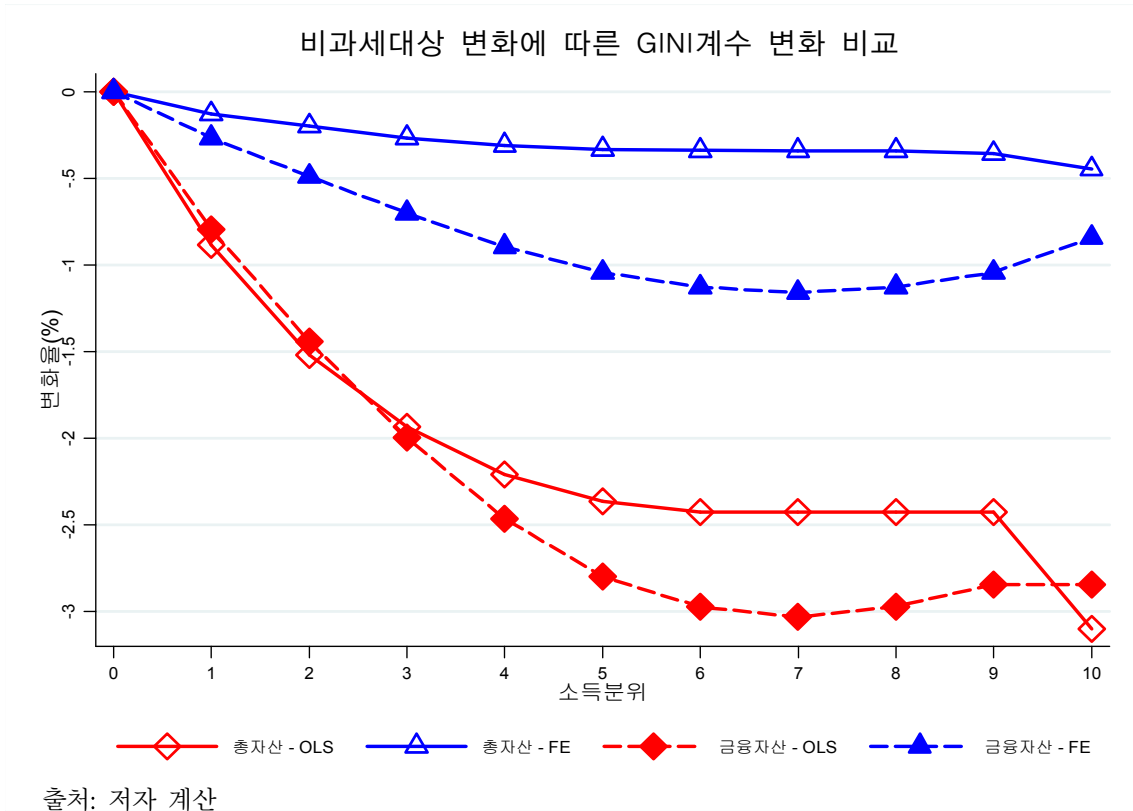
- [그림 V-9]는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금융자산의 GINI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총자산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남
 - 금융자산의 GINI계수가 총자산의 GINI계수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도 수준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불평등도의 개선 추세는 총자산과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V-9]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 GINI계수 변화



- [그림 V-10]은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GINI계수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이 높아짐에 따라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과세대상을 소득 6분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평성 개선 정도는 5분위까지 확대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불평등도 개선 수준(GINI계수의 수준)은 다르지만 개선율(변화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 자산 종류에 따른 형평성 개선율의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남
 - 탄력성 추정방식(OLS와 FE)에 따른 형평성 개선율의 추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탄력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

[그림 V-10] 비과세대상 변화에 따른 GINI계수 변화 비교



- 비과세대상을 확대할수록 자산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 5분위 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급격히 개선되지만 소득 6분위 이상으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형평성 개선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함
- 비과세대상이 소득 6분위 이상으로 확대될 때 GINI계수는 비과세대상이 소득 5분위가 되었을 경우의 GINI계수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자산 보유 형평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소득 5분위 수준까지는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가. 타당성 평가

- (정부 지원의 필요성) 저축과 투자 장려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유효
 -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
 -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하여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 지출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

나. 효과성 평가

- (순저축의 증가)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신규저축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도입되어 왔고, 일반과세되는 금융상품에서 과세특례 금융상품으로 자산이동을 초래
 - 저축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
- (형평성 측면) 조세지출의 상당한 비용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귀결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훼손
 - 이는 고소득층이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중복가입하거나 서민 또는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많기 때문
 - 2014년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2014년 조합 등 예탁금 가입자의 약 24%가 비과세종합저축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1%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세수효과) 「조세특례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는 약 1조 5,324억원 규모
 - 이 중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가 약 1조 2,012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가. 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

- 저축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는 저축 지원 및 재산형성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고, 세제혜택도 역진적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저축에 대한 지원이 신규저축을 증가시켰는지에 여부와 상관없이 도입되어 왔고, 일반과세되는 금융상품은 과세특례 상품으로 자산 이동을 초래
 -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운용은 세수손실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의 형태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
 - 대부분의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이런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운영으로 한정된 재정 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
- 따라서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중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순성, 효율성, 형평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
- (단순성)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단순화하여 잠재적인 저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복잡한 과세특례제도로 인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 등을 축소할 필요
 - 현행 과세특례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유도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

- 가입자격, 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페널티 등이 과세특례별로 상이하여 이해가 어렵고,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하기 쉽지 않는 등 저축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합하여 재설계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여 복잡한 제도로 인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필요
 -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연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계좌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단순화하고, 그 외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심으로 단순화
- (효율성) 과세특례제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경우 신규저축을 유도할 수 있으나 상당한 자산이동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세수손실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이론적으로 신규저축의 증가 여부는 불명확하나, 자산 이동을 초래하는 것은 명확
 - 실제 세제혜택보다는 특정 계층에 직접적인 매칭이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음
- (형평성)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대상의 소득한도, 세제혜택 한도 등이 있으나, 실제 소득계층별로 받는 혜택의 상당한 차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
- 세제혜택의 수혜라는 측면에서 소득격차의 문제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지출의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모든 개인의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 사실
 - 이런 세제혜택 또는 인센티브가 소득이 낮고, 저축률이 낮은 계층을 타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포괄성) 이미 재산을 형성한 계층보다는 잠재적인 저축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저축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모든 개인들이 세제혜택 받는 저축계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동가입 프로그램, 급여 공제 프로그램이 저축 가입이나 순저축을 증가하는데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음

나. ISA와 연계한 정비 방안

- 현행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하여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저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제외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
 -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저축자들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 추가적으로 향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영구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그 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일몰도래 시 심층평가를 통해 정비할 필요
 -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 등 4개의 과세특례는 개별적인 정비가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생주기별, 정책대상별로 구분 운영할 필요
 - 생애주기별: 청년형 ISA-일반형 ISA-장년층 ISA
 - 청년형은 만 15~29세
 - 일반형은 만 30~64세
 - 장년층은 만 65세 이상
 - 정책대상별: 농어민형(조합형) ISA-서민형 ISA

1) 정비 방안 1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의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각 세부 제도는 유지하면서, 중복가입은 제한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은 장년층 ISA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합 등의 예탁금은 농어민형(조합형) ISA로 명칭을 변경
 - 이 경우, 개인들이 여러 형태의 ISA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조합 등의 예탁금도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최소한의 제도 변화를 통해 금융고소득자의 중복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

- 대부분 현행 제도의 세부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존재

- 그러나 대부분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고,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보유기간 등으로 인해 가입률 제고에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2) 정비 방안 2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재설계하는 방안으로 가입대상, 세제혜택 등을 조정하는 방안

- 가입대상자: 만 1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조합 등 예탁금은 만 20세 이상 개인
 - 1안) 소득 구분없이 15세 이상 개인
 - 2안) 개인 거주자 모두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예탁금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세제혜택은 일정 금융소득까지 기본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탁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이고 연이자 3%를 가정하면 90만원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연이자 3%를 가정하면 150만원까지
 - 1안) 연령 구분 없이 1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
 - 2안) 연령별 비과세 한도를 차등설계하는 방안
 - 예) 15세 미만 50만원, 일반형(15세 이상 65세 미만) 100만원, 고령자형(65세 이상) 150만원
 -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할 경우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효과적

- 세제혜택을 일정 금융소득까지 제한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15세 미만의 개인에게도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15세 이하에 한해서 가입한도를 설정하여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자녀, 손자 등을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있음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이미 자산이 형성된 계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을 더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
 - 의무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

- 편입대상 금융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역내펀드, 역외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보험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하도록 허용할 필요
 -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하도록 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 제도의 영구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8년까지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가 ISA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ISA는 영구적으로 운영 중

- 가입 유형의 확대
 - 신탁형, 일임형, 자유계약형 등
 - 현재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특정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형도 포함시킬 필요
 - 이는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또는 조합 등 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통합하기에 용이하며, 개인들이 가입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 국세청, 『2016년 국세통계연보』. 2016.
_____, 내부자료.
-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16.11.25.
- 금융투자협회, 「38개 자산운용사,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29일 동시 출시」,
보도자료, 2016.2.25.
- 금융투자협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조원 돌파」, 보도참고자료, 2017.1.11.
- 기획재정부, 「최근 저축률 동향과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12.12.6.
- 김학수 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5년 조세특례임의심층
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1.
- 김현정, 「우리나라 저축률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은 금요강좌, 2014.
- 대한민국정부,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2016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손종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본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2014-27, 한국은행, 2014.9.
- 송승주,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2009.4.
- 이상엽·한종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신설』,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
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9.
- 전병목·홍범교, 『현행 비과세 감면 저축의 실효성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06.
- 전영준·이철인,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 12.
-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_____, 「2016 고령자 통계」.

- Attanasio, O. P., & DeLeire, T. C., "IRAS and household saving revisited: some new evidence," (No. w49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4.
- Attanasio, O. P., & Weber, G., "Is Consumption Growth Consistent with Intertemporal Optimization? Evidence from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6), 1995.
- Attanasio, O., & DeLeire, T.,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Vol. 112, 2002, pp. 504~538.
- Besley, T., & Meghir, C., "Tax based savings incentives," unpublished typescript prepared for World Bank Savings project. 1998.
- Campbell, J. Y., "Consumption-based asset pricing,"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inance*, 1, 2003, pp. 803~887.
- Campbell, J. Y. and N. G. Mankiw, "Permanent income, current income, and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8, No. 3, 1990, pp. 265~279.
- Chernozhukov, V., & Hansen, C., "The effects of 401(k) participation on the wealth distribution: an instrumental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3), 2004, pp. 735~751.
- Engen, E. M., Gale, W. G., Scholz, J. K., Bernheim, B. D., & Slemrod, J., "Do saving incentives work?"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 pp. 85~180. <http://www.jstor.org/stable/2534631> 검색일자: 2015.7.6.
- Engen, E. M., & Gale, W. G., "The effects of 401(k) plans on household wealth: Differences across earnings group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8032, 2000.
- Feldstein, M., & Horioka, C.,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The Economic Journal*, 90(358), 1980, pp. 314~329.
- Glenn, R., & Skinner, J. S.,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Saving Incentiv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4), 1996, pp. 73~90.
- Honohan, Patrick, "Financial Policies and Household Saving," in Klaus Schmidt-Hebbel and Luis Servén(eds.), *The Economics of Saving and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Hall, R. E.,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Consump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8, pp. 339~357.

Venti, S. F., & Wise, D. A., “Government policy and personal retirement saving,”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6, 1992, pp. 1~42. The MIT Press.
<http://www.nber.org/chapters/c10838.pdf> 검색일자: 2015. 7. 6.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5.

_____,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5*, 2015.

_____, *Pension at a Glance 2015*, 2015

Venti, S. F., & Wise, D. A., “Individual response to a retirement saving program: results from US panel data,” *Ricerche Economiche*, 49(3), 1995, pp. 235~254.

<웹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미국국세청, <http://www.irs.gov>

영국 정부, <https://gov.uk>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일본 금융청, <http://www.fsa.go.jp>

일본 정부 법령사이트, <http://law.e-gov.go.jp>

서울시복지재단, <http://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hop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summary01.jsp>

ISA 다모아, <http://www.isa.kofia.or.kr>